

연구보고 2017-01



KICE
OPE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

김나영 김아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아녀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는 이미 전 세계 91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OECD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양육의 고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아동수당의 도입은 수년째 논의만 이루어져 왔을 뿐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여 왔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급속한 고령화 등의 유례없는 인구변화와 맞물리면서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아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아동의 양육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인 아동수당도입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7년 8월 현재, 정부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을 한 단계 확대하게 될 이번 정책의 도입에 즈음하여 본 연구는 선진국의 아동수당 관련법과 제도의 연혁을 정리함과 동시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도입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추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2018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수당정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세부적인 정책 추진의 방향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정규모 편성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어느 때 보다도 정책도입에 대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現) 시점에 본 연구가 아동수당정책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해당 정책이 아동복지정책으로서 우리 사회에 연착륙(軟着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7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차 례

요 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 내용	11
3. 연구의 방법	12
4. 선행연구	12
5. 관련 법안 검토	19
II. 해외 사례	28
1. 독일	28
2. 일본	44
3. 영국	51
4. 시사점	56
III. 아동수당 지원 규모 추계	58
1. 아동수당의 유형	58
2. 추계자료 및 모형	60
3. 추계 결과	64
IV. 양육지원 정책	75
1. 양육수당	75
2. 세제지원	77
V. 정책제언	83
참고문헌	86
부록	93
부록 1. 해외 국가의 아동수당 현황	95
부록 2.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2018-2027)	100

표 차례

〈표 I-5-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8~2022년(박인숙 의원안)	20
〈표 I-5-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8~2022년(김광수 의원안)	21
〈표 I-5-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8~2022년(윤소하 의원안)	22
〈표 I-5-4〉 제20대 국회 아동복지법 개정안 비교	23
〈표 I-5-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8~2022년	25
〈표 I-5-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8~2022년	25
〈표 I-5-7〉 제20대 국회 아동수당법 제정안 비교	26
〈표 II-1-1〉 독일 연방아동수당법의 내용	30
〈표 II-1-2〉 아동수당 지급액	34
〈표 II-1-3〉 연방부모수당/부모휴직법(BEEG)의 내용	38
〈표 II-2-1〉 최근 일본 아동수당제도 변화	44
〈표 II-2-2〉 일본의 아동수당법	46
〈표 II-2-3〉 아동수당 지급액	48
〈표 II-2-4〉 소득제한한도액	48
〈표 II-2-5〉 아동수당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49
〈표 II-2-6〉 아동수당의 비용부담	51
〈표 II-3-1〉 2015-2016 영국의 양육지원 수당 (Benefits for families with children) 현황	52
〈표 II-3-2〉 영국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액수	54
〈표 II-3-3〉 해외 단기체류 시 아동수당 지급 조건 및 기간	54
〈표 II-4-1〉 독일, 영국, 일본 아동수당 제도 비교	56
〈표 III-1-1〉 아동수당제도의 유형	59
〈표 III-2-1〉 장래인구추계	61
〈표 III-2-2〉 독일의 아동수당 인상	64
〈표 III-2-3〉 프랑스 가족수당	64
〈표 III-3-1〉 기본형추계결과	66
〈표 III-3-2〉 증가형(1)추계결과	68
〈표 III-3-3〉 증가형(2)추계결과	70

〈표 III-3-4〉 출산순위형(1)추계결과	71
〈표 III-3-5〉 출산순위형(2)추계결과	73
〈표 IV-1-1〉 양육수당 지원 내용	75
〈표 IV-1-2〉 양육수당 재정 전망치: 현행 지원 단가	76
〈표 IV-1-3〉 양육수당 재정 전망치: 5만원인상	77
〈표 IV-1-4〉 양육수당 재정 전망치: 10만원인상	77
〈표 IV-2-1〉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조세 지원	79
〈표 IV-2-2〉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조세 지원 실적	82

그림 차례

[그림 II-1-1] 아동수당 계산법	34
[그림 III-1-1] 장래인구추계 (선택 연령)	62
[그림 III-3-1] 기본형 추계	65
[그림 III-3-2] 증가형(1) 추계	67
[그림 III-3-3] 증가형(2) 추계	69
[그림 III-3-4] 출산순위형(1) 추계	72
[그림 III-3-5] 출산순위형(2) 추계	73
[그림 III-3-6] 0-5세 추계 비교	74
[그림 III-3-7] 0-12세 추계 비교	74

부표 차례

〈부표 II- 1〉 해외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95
〈부표 II- 2〉 캐나다 아동수당 변동 현황	96
〈부표 II- 3〉 캐나다 연령별 아동수당	97
〈부표 II- 4〉 아일랜드 아동수당(2017)	97
〈부표 II- 5〉 스웨덴 아동수당	98
〈부표 II- 6〉 핀란드 아동수당	98
〈부표 II- 7〉 아동수당과 보호자 수당	99
〈부표 III- 1〉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18)	100
〈부표 III- 2〉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19)	101
〈부표 III- 3〉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0)	102
〈부표 III- 4〉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1)	103
〈부표 III- 5〉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2)	104
〈부표 III- 6〉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3)	105
〈부표 III- 7〉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4)	106
〈부표 III- 8〉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5)	107
〈부표 III- 9〉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6)	108
〈부표 III-10〉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7)	109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아동수당은 유자녀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보기도 함.
 - 유자녀 가족이 자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하는 비용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출산율의 감소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나,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출산 중단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함.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에 최근 경제적·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수당 도입 법안(0~12세, 월 10~30만원 지급 등)이 여러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함.
- 이미 91개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자녀양육지원의 형태이며, 특히 우리나라 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시행은 재원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책 우선순위(정책의지)의 문제이며 재원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임.
- 이에 본 연구는 아동수당 도입했을 때의 재원규모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추정해 봄으로써 국가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배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선진국의 아동수당 관련법과 제도의 연혁을 정리함과 동시에 현황을 정리함.
-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추계함.
- 이를 통하여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소요 되는 정부 재정 규모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선진국의 아동수당 관련법과 제도의 연혁을 정리함과 동시에 현황을 정리함.
- 재정추계
 -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추계함.

다. 선행연구

- 이선주 외(2006)은 아동복지권의 실현,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인구사회학적 변화의 상호 연관성에 근거하여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해당 제도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최성은(2010)의 연구는 아동수당 재원조달 구조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함.
- 최영진 (2014)에 따르면, 아동의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빈곤 및 해체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아동복지의 증진 및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율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됨.

라. 관련 법안 검토

□ 아동복지법 개정안

-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OECD 국가

중 초저출산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저출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양육 가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함.

- 국민의당 소속의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재원이 약 80조 정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한 것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함.
-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의 아동들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 가정에 대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정책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함.
- 정의당 소속의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장기간 심각한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현금성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양육비용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벗어난 실질적인 가계 지원수단으로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함.

□ 아동수당법 제정안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소득양극화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의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봄.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의원은 아동수당의 대상연령을 6세 이상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함.

2. 선진국의 아동수당제도

가. 독일

-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종류로는 아동수당(Kindergeld), 부모수당(Elterngeld), 임신부수당(Mutterschaftsgeld)등이 대표적임.

- 특히, 독일의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함.
- 지급되는 액수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학업이나 직업교육, 대학진학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5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됨.

나. 일본

-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에 시작됨.
- 초기에는 5세 미만의 셋째 이후 아동이 지급대상이었으며(부모 소득에 따른 제한 있음), 금액은 월 3000엔이었음.
- 2009년 민주당 집권과 함께 소득제한 삭제, 지급금액 인상 등 확대가 이루어져 기존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범위를 중학교 졸업까지의 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지급액도 월 13,000엔으로 인상함.

다. 영국

- 현재의 아동수당(Child Benefit) 제도는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과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1977년 4월에 도입됨.
- 2015년 8월 31일자로 약 7백2십만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1천2백만명 이상의 아동이 혜택을 받음.

3. 아동수당 지원 규모 추계

가. 아동수당의 유형

- 아동수당의 목적과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아동수당제도의 기본 목적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보장
 - 둘째 아동의 양육에 관해서 사회적인 지원을 하는 아동복지로써 중요한 역할

- 셋째, 아동수당이 다른 정책 등과 더불어 안정된 가정·육아의 전망을 가진 사회 구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의 가족정책 및 인구정책

나. 추계 자료 및 모형

-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부터 향후 10년간의 지원 규모를 추계함.
- 아동인구규모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5~2065)' 자료를 사용하여 연령 별로 추정된 아동인구를 구성함.
 - 0~12세 영유아 및 아동의 총인구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5,769,902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7년에는 5,328,025명인 것으로 추계됨.
- 각 년도의 아동지급수당 총 규모는 정부가 월 지급하기로 한 10만원에 각 세(歲) 추정인구를 곱하고 여기에 12를 곱함으로써 추계됨.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섯 개의 추계모형을 구성함.

다. 추계결과

- 기본형
 -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모형을 기본형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은 2018~2027년 10년 기간을 추계함.
 - 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2018년 첫 해에는 3,091,478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됨.
 - 아동인구 추계규모가 점점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추계된 예산은 2022년에 2,926,896백만 원 규모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
- 증가형(1)
 - 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2018년 첫 해에는 3,224,412 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아동인구 추계규모가 점점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추계된 예산은 2022년에 3,052,753백만 원 규모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
 -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0-5세) 추계규모는 15,622,857백만 원임.

□ 증가형(2)

- 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할 경우, 첫 해인 2018년에는 3,091,478백만 원이 지원예산으로 추계되었고, 2022년 지원예산으로 추계된 규모는 3,512,275백만 원으로 추가적인 지원 증가로 다른 모형과는 달리 다소 상승함.
-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 추계규모는 16,153,645백만 원이며, 추계기간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본다면 총 36,676,136백만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됨.

□ 출산순위형(1)

- 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2018년 첫 해에는 1,165,784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고, 2022년에 1,124,694백만 원 규모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
-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 추계규모는 5,746,010백만 원이고, 추계기간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본다면 총 11,349,254백만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됨.

□ 출산순위형(2)

- 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2018년 첫 해에는 3,674,370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 추계규모는 17,851,775백만 원이며, 2027년까지 본다면 총 35,309,289백만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됨.

4. 양육지원 정책

가. 양육수당

- 박진아 외(2015) 연구에 따르면, 현행 양육수당 단가를 유지할 경우 2018년 재정규모는 1,974,394백만 원, 2022년에는 1,938,021백만 원으로 추산됨.
 - 현행 단가 보다 10만 원 인상한다면, 양육수당 재정규모는 2018년 3,233,884백만 원, 2022년 3,168,906백만 원으로 추계 결과를 보고함.

-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보았을 때, 기본모형을 기준으로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월)을 지급할 때 소요되는 재정규모가 2018년 3,091,478백만 원, 2022년 2,926,896백만 원이므로 현행 보다 10만 원 인상 지급하는 양육수당 경우를 고려한다면 아동수당 지원의 재정소요 규모가 더 낮음.

나. 세제지원

-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2017년 기준 13,598억 원, 근로장려세제는 12,45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2017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관련 세제지원 총 규모는 32,083억 원으로, 비교년도의 차이와 수혜자의 기준에 대한 차이는 있겠으나 2018년 규모로 추정된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원규모인 30,914억 원 보다 그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보다 정확하게 자녀 양육에 대한 혜택에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녀세액공제 규모만 보더라도 2018년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원규모의 44%에 이르는 규모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세제지원의 개편을 통하여 아동수당 재정규모의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5. 정책제언

-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출산장려 목적 고려
 - 다른 국가와는 달리 출산장려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의무교육 연령과 아동수당 수령 연령의 연계 고려
 - 최소한 의무교육을 받는 연령까지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 연령을 설정할 필요 있음.
- 기존 각 종 지원제도와 중복성을 점검하여 해당 지원의 정리 및 폐지 고려
 - 기존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 및 관련 세제지원의 역할을 재정리하여 아동

수당과 그 성격 및 역할이 중복되는 지원은 기존 수혜자들의 불편 혹은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나갈으로써 필요한 경우 폐지되는 수순을 밟도록 하여 국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할 것임.

□ 아동수당 지원 증액 및 다양한 지원 기준 수립 고려

- 물가의 상승, 자녀양육에 대한 지출 패턴 및 규모 변화 등 향후 자녀양육 가구가 처할 여러 가지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아동수당 지원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책정될 수 있는 정책적 모형을 해당 부처에서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음.

□ 통합형 아동수당체계 마련

- 아동수당 지원의 증액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 수혜자들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지원으로써의 수당을 제공하고, 그에 더하여 개별 수혜자들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적인 정책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수당은 유자녀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하겠다. 아동수당의 목적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우선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보기도 하고(국회예산정책처, 2017), 유자녀 가족이 자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하는 비용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 Bradshaw(2003: xxi)의 유럽공동체 가구패널조사(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Survey, ECHP)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유럽공동체 국가 중 9개국에서 노인층의 빈곤율 보다 아동의 빈곤율이 더 높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수당은 경제·사회적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부부들의 출산을 제고함은 물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최성은·우석진, 2009). 즉, 아동을 사회적 자원으로 보고,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2006: 9). 또한 아동수당 지급은 아동이 있는 가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아동이 없는 가구와의 경제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및 가족정책의 일환인(박경일, 1996: 199-231) 동시에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적 정책이기도 하다(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2006).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양육의 고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오고 있는데(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2006: 39), 출산율의 감소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나,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출산 중단的重要原因으로 들고 있다(민희철 외, 2007). 따라서 자녀 양육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서 관장하는 정부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기는 어렵기에 범부처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민희철 외, 2007).

2010년 현재, 한 달 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 추계액은 두 당 비용 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한 자녀 가계 월 755,972원, 두 자녀 가계 월 658,607원, 세 자녀 가계 월 546,309원이며, 지출 항목별 추계 방법을 이용한 결과 한 자녀 가계 월 950,677원, 두 자녀 가계 월 804,092원, 세 자녀 가계 월 635,974원으로 산출되었다(신윤정, 김지연, 2010).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영유아 자녀 1인의 경우 85만원, 2인인 경우 66만원, 3인인 경우 53만원으로 산출되어, 외국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영유아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줄어서 규모의 경제 특성이 나타났다(서문희 외, 2010). 그러나 총 양육비와 소득 및 지출대비 양육비 비중은 자녀수 증가에 따라 늘어났는데, 이는 1인 39.8%, 2인 55.5% 3인 69.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서문희 외, 2010).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출이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자녀 양육비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신윤정, 김지연, 2010).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약 80조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상보육, 양육수당 도입 등 각종 제도를 추진하였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 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김광수 외, 2017). 따라서 자녀양육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 및 출산율 제고의 측면에서의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인구사회학적 변화,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아울러 출산율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2006년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2006).

이에 최근 경제적·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의 출산율 장려하기 위해 아동수당 도입 법안(0~12세, 월 10~30만원 지급 등)이 여러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우선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2016. 10. 7)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2016. 12. 8, 김광수 의원, 2017. 1. 11)이 발의되었는데, 박광온 의원이 발

표한 아동수당 방안은 만 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박광은, 김병관, 양향자, 2016). 보다 구체적으로는 0~만 2세까지 10만 원, 만 5세까지 20만 원, 만 12세까지 30만 원을 연령별로 매월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되 양육가정의 자녀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두 자녀 가구에는 60만 원, 세 자녀 가구에는 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혜택을 전체가구의 93.21%로 제한하여 상위 6.8%의 가구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12. 9)」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이는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자녀에게 월 10만원, 둘째 자녀에게 월 20만원, 셋째 이후 자녀에게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마련되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7. 1. 11.)」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0~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로 정하였다(안 제14조의2 신설).

이미 91개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자녀양육지원의 형태이며, 특히 우리나라 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시행은 재원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책 우선순위(정책의지)의 문제이며 재원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수당 도입했을 때의 재원규모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추정해봄으로써 국가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배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의 아동수당 관련법과 제도의 연혁을 정리함과 동시에 현황을 정리한다. 둘째,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추계한다. 이를 통하여 양

육수당 지원 정책에 소요 되는 정부 재정 규모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연구

각 국의 아동수당 제도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아동수당 도입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일찍이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영국(1945년), 일본(1972년) 등 선진국의 아동수당 관련법과 제도의 연혁을 정리함과 동시에 현황을 정리한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분담의 주체가 국가, 고용주, 국가와 고용주로 구분됨에 따라 이들 각각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나. 재정추계

다음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추계하였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지급액 등에 대한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재정 규모를 산출하고자 한다. 또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의 재정 규모를 추계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

이선주 외(2006)은 아동복지권의 실현,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인구사회학적 변화의 상호 연관성에 근거하여 아동수당제도의 근거와 필요성을 마련하고자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해당 제도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몇 가지 모형을 통한 재정규모를 산출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에 대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그 도입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 가능하도록 하고 그러한 양육 비용을 공정하고 집합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수준으로 미래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아동 양육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원의 하나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보았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양육 지원 급여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육 및 교육 보장, 의료와 주거 보장, 세금혜택과 현금 지원, 기초소득 보장-은 모두 적절한 아동양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적 급여이기는 하나, 특정한 상황에 연계되어 주어지는 급여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아동양육 지원급여들 중에서 특히 보육급여와 아동수당제도의 관계는 정책적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동수당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아동양육 지원급여들이 특정한 상황에 연계된 급여들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직접적 현금 급여라는 점에서 다른 지원과는 차별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개별 가정들을 지원하는 총체적정책 급여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로서 제도 도입의 근거와 필요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수당제도의 구조는 제도유형 및 적용범위, 재원, 수급자격조건, 급여, 행정담당기관으로 구성된다고 정리하였다. 국가마다 그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아동수당제도의 유형 및 적용 범위 등을 변화하여왔는데, 그 예로, 1994년 핀란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현금 급여 수준을 높이고 가족을 위한 세금혜택을 폐지하였고, 프랑스는 1997년 자산 조사에 근거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강한 반대에 부딪혀 1998년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재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아동수당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소득세제에서 연소자부양공제의 부분적 폐지와 배우자특별공제가 폐지되었고, 수당을 수급하기 위한 자격조건(연령)과 급여액 등을 차등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급자격조건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최종학력 또는 최소 노동연령인 만 14세~18세까지로 규정한다고 정리하였다. 1990년도 이후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제도를 소득과 연계시키고, 어떤 국가는 소득과 연계하지 않고 보편주의를 채택 등 개별 국가의 정치·경제·인구사회학적 상황의 특수성이 해당 제도에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선주 외(2006)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아동수당제도의 기본구조로 수급 연령을 의무교육학령인 만 15세까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의 급여액은 월 5만원으로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소득과 연계된 아동수당을 양육담당자에게 지원하도록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최성은(2010)의 연구는 아동수당 재원조달 구조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해당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의 도입 시 수당의 형태, 대상자 및 급여 수준에 따라 재원의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상당량의 재원이 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및 빈곤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공공부조형의 아동수당을 먼저 도입하느냐, 아니면 보편적인 형태의 아동수당으로 도입하느냐가 논의의 대상이라고 보고, 도입되는 아동수당제도의 유형에 따라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아동수당 유형별 재원조달의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보편적 아동수당이나 공공부조형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그 재원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인 반면, 아동수당이 근로자가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고용관련 유형으로 도입되는 경우 고용주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이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경우는 사회보험료가 주된 재원이 되며,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아동수당의 재원으로 한다든지,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고용주가 근로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의 수당까지 일부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포함한 일반인까지 부담을 지는 포괄적 개념으로 피고용인 급여의 0.13%를 각출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는 사회기여금을 소득에 부과하여 아동 및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연금보험료의 일부로 아동수당 등 가족수당의 재원을 조달하는 포르투갈의 경우는 연금보험료의 2.15%를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성은(2010)의 해당 연구에서는 조세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였는데, 아동수당 재원 마련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1)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 2) 국채를 통한 재원조달, 3) 혹은 세출구조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절감분을 활용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보장세¹⁾와 같은 목적세의 신설, 혹은 사회보험료 인상,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및 부양아동관련 인적공제 등 다양한 방

1) 국채, 담배세 등을 재원으로 함.

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추가적 재원을 아동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부양아동관련 인적공제를 정비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형성되어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실시될 수 있다면 다른 선진국가에서 보여주듯이 정부가 재원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으로서의 '보편성'은 추구될 수 있겠지만 제도의 도입초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아울러 해당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원조달의 방식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국가들의 재원조달 방식은 다양하지만, 아동수당의 제도적 성격이 보편적이면서 그 지원에 비교적 관대한 국가들의 경우도 정부가 재원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제 등에서 아동관련 세제혜택들을 정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수당제도가 보편화되거나 대상자의 확대가 일어나는 경우 기존 소득세제의 부양가족관련 공제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추가적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들도 있었다.²⁾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되어 보편성에 근접하여 갈수록 재원측면에서의 선택은 관련 소득공제제도의 정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때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³⁾ 또한 아동수당이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차상위 계층이상의 소득계층을 포함하고, 대상 연령도 12~18세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면, 소득공제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계층 변동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편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대다수의 가구가 수혜대상이 됨에 따라 세제감면 혜택의 정비에 따른 수혜계층의 변동도 적게 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은 조세제도의 단순성과 이에 따른 효율성의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해당

-
- 2) 또한 부양아동관련 공제제도가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세제감면과 수당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세제감면 혜택대신 수당이라는 현금지원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3) 현행 소득세의 인적공제제도는 소득 역진성이 있으며, 세점 이하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적다는 측면의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소득공제제도를 정비하여 아동수당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소득역진성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그러나 아동수당이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도입되는 경우 인적공제제도 개편을 통한 재원조달은 고소득층 유자녀 가구에서 저소득층 유자녀가구로의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게 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보았음.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아동수당 재원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영진 (2014)에 따르면, 그동안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 경제적 차원의 노동력 확보와 교육, 근로조건의 정비 등에 초점을 두어, 현재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노동인력의 확보가 개별적인 노동인력의 삶의 전반적인 조건이 최소한이나마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에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공동체의 유지가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 한 양질의 노동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 1.17명을 기록하였고,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3.2%인 약 656만 9천명으로 집계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될 전망이다. 노동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인구수의 유지가 필요조건이 되지만 문제는 젊은 세대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때 우리사회의 노동인력구조는 심각한 왜곡이 초래될 것이며, 나아가 다음세대 노동인력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과 양육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출산과 양육은 보조금지급이나 각종 혜택 등의 대책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영역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어 출산과 양육을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직업생활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이 절실함을 지적하였다. 현재까지의 노동 관련제도는 재직자에게 주로 초점을 두므로써 근로자가 출산과 양육의 과제를 안게 된 경우 직업과 가정의 양자택일을 사실상 강요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언급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여전한 남성위주의 문화로 자녀 양육에 대하여서는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이 주어짐으로써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양육의 기간을 거치면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아동의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빈곤 및 해체문제를 해결함을 물론, 아동복지의 증진 및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율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 양육가정에 대한 소득보장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첫째,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제도이기 때문에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아동복지권의 실현), 미래 노동력의 확보 등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연령조건은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비용이 아동의 연령별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라는 실태적 요소와 개별적인 선택적 요소를 공시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규정과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아동수당의 적용 자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아동수당에 관한 철학의 문제인 동시에 입법의 관점에 대한 문제이므로 모든 아동의 부양을 사회적으로 지원한다는 관점이라면 첫째 자녀부터, 인구정책과 다자녀가정을 지원한다는 관점이라면 둘째 자녀부터, 아동양육 가정을 우대해야 한다는 관점이라면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넷째,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요건이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 등의 어려움은 소득기준보다는 연령기준 제한을 통해 일정부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아동수당의 지급수준은 최소한의 최저임금이나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지급액은 정액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아동수당 재정을 조세로 할 것인지, 사회보험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적 선택 또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문제로 보고,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력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 국민적 연대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 다른 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상은, 정찬미, 2016), 아동수당제도는 서구 복지국가들 중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일반적 사회보장제도이며⁴⁾, 1927년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에서 2차 대전 후 1950년대까지 도입되어,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 중 하나로 기능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현재까지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여러

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2014).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14/15".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 제한된 재정여건 하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 번에 모두 시행 할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의 실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보았다.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보육서비스와 아동수당의 두 가지 대안적 방식을 놓고 우선순위를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도입으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크게 보육서비스와 아동수당이라고 보는 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보편적 보육서비스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제는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을 본격화할 때임을 주장하였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존 조세지원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과의 중복 문제라고 보았다. 현재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조세지원체계로서 인적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등의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때, 이들 조세지원제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지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기존 조세지원제도를 어떻게 대체 또는 유지할 것인가에 따라 어떤 소득계층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게 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해당 연구는 기존연구들과 달리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인 아동수당과 조세지원정책의 양자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또한 한국에서의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조세지원제도들의 대체 문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인적소득공제 중심의 역진적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수당 중심의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둘째,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는 인적소득공제로 인하여 고소득층이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구조이므로 이를 소득기준을 설정하여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상당한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현가능성이 약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고소득층에도 아동수당을 제공하면서 그동안의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셋째, 조세지원정책 측면에서는 중산층 이상이 주된 수혜대상인 인적소득공제 및 비환급성 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하되, 저소득층 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특히 기존 제도 중에서는 환급형 세액공제인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소득 및 서민층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해당 제도들은 우선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스웨덴의 경우에서 보듯이 근로장려세제를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지원체제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⁵⁾. 스웨덴과 같이 중산층의 소득수준까지 근로장려세제 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함은 물론 급여감소 구간도 대폭 확대하여 완전한 급여감소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근로비유인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5. 관련 법안 검토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도입 논의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작되었다(이선주 외, 2006: p.3). 당시 논의는 아동수당 제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결국 효과성과 비용부담 문제로 인해 제도도입은 장기적 과제로 미루어지게 된다(이선주 외, 2006: p.3; 유해미, 2010: p.1).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노동환경에 대한 지적도 많지만, 가장 심각한 이유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대표적으로 지적되어 왔다.⁶⁾ 이에 이번 제20대 국회(2016-2020)에 들어와서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입법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아동수당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0-5세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아동수당에 관한 3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중 1건은 국정과제를 발표한 이후 발의된

5) 현재 근로장려세제는 수급대상을 너무 좁게 설정하여 빈곤한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도 어렵고 빈곤층을 탈피하게 되면 급여가 급속하게 제거되어 근로비유인을 야기함.

6) 헤럴드 경제(2017년 2월 13일일자 기사), “10명중 9.5명 “양육비 탓에 애 못 낳는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13000867>(2017. 8. 1. 인출)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제20대(2016-2020)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아동수당 도입 시 법률상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아동복지법 개정안

1) 박인숙 의원안⁷⁾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OECD 국가 중 초저출산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저출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양육 가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이 안의 주요내용은 만 6세 이하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첫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둘째 아동에게는 월 20만원, 셋째 이후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안14조의 2 제1항). 또한 아동수당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아동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안 제14조의2 제2항).

이 개정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각 연령별 전체 아동의 수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0세에서 12세 아동수는 2018년 5,769,902명, 2022년에는 5,571,683명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27조 8,04억원(연평균 5조 5,621억원)의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표 1-5-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8~2022년(박인숙 의원안)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아동수당 (안 제14조의2)	57,739	56,429	55,264	54,659	54,014	278,104	55,621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6c), p.1.

7) 이하 박인숙의원 대표발의(20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53호) 참조.

2) 김광수 의원안⁸⁾

국민의당 소속의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재원이 약 80조 정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한 것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동 법안에서는 아동수당을 0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 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안은 첫째, 둘째 자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개정 법률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년 첫해 16조 8,666억원의 예산 지출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총 83조 24억원(연평균 16조 6,005억원)의 재정을 필요로 한다.

〈표 1-5-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8~2022년(김광수 의원안)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합계	168,666	167,862	166,447	164,178	162,871	830,024	166,0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7a), p.1.

3) 김승희 의원안⁹⁾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의 아동들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 가정에 대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정책인 아동수당을 도입함으로써 출산·양육에 대한 일반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하고자 제안되었다. 이에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안 제14조의2 제3항). 동 법안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으며(안 제14조의2 제4항),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안 14조의2 제5항).

8) 이하 김광수의원 대표발의(20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44호) 참조.

9) 이하 내용은 김승희의원 대표발의(20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13호) 참조.

4) 윤소하 의원안¹⁰⁾

정의당 소속의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장기간 심각한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현금성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동 법안에서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14조의2 제1항). 아동의 출생순서 등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있고(안 제14조의2 제3항), 거짓이나 잘못된 지급의 경우에 국가에서 환수조치 할 수 있다(안 제14조의3 제1항).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안 제14조의4).

동 개정안에 따른 재정의 필요는 2018년 6조 4,071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년간 31조 3,790억원(연평균 6조 2,758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표 1-5-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8~2022년(윤소하 의원안)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아동수당의 지급 등 (안 제14조의2)	64,071	63,508	62,585	62,044	61,582	313,790	62,758

주: 아동수당의 지급기준이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7d), p.1.

5) 전해숙 의원안¹¹⁾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현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아동수당 도입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소개한 이후 발의된 것이다. 동 개정안은 양육비용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벗어난 실질적인 가계 지원수단으로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한다. 동 법안은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10) 이하 내용은 윤소하의원 대표발의(20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43호) 참조.

11) 이하 내용은 전해숙의원 대표발의(20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71호) 참조.

동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0세에서 5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18년 약 2,576,232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총 14조 9,788억원(연평균 2조 9,958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e: pp.1-3).

〈표 1-5-4〉 제20대 국회 아동복지법 개정안 비교

구분	박인숙의원 대표발의안 ¹⁾	김광수의원 대표발의안 ¹⁾	김승희의원 대표발의안 ²⁾	윤소하의원 대표발의안 ³⁾	전혜숙의원 대표발의안 ⁴⁾
발의일	2016. 12. 8.	2017. 1. 11.	2017. 6. 5.	2017. 6. 12.	2017. 7. 19.
지급 대상	만 6세 이하	12세 이하	6세 이상 18세 미만	만 12세 미만	5세 이하
지급 금액	첫째:월 10만 둘째:월 20만 셋째:월 30만	월 30만원	월 15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지급 방식	현금지급	현금지급	현금지급	현금지급	현금지급
지급 기준	소득기준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50이하 *4인가구기준 약 439만원	기준중위소득* 미만 가구 *4인가구기준 약 439만원	소득기준 없음	소득기준 없음
재원 분담	국가 부담	국가 부담	국가 부담	국가 부담	국가 부담
지급 정지	없음	없음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대통령령
환수	없음	없음	부정수급 환수	부정수급 환수	대통령령
비용 추계	연평균 5조 5,621억	연평균 16조 6,005억	-	연평균 6조 2,758억	연평균 2조 9,958억
기타	-	-	-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 아동수당은 소득 인정액 산정시 제외	-

자료: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7), p.24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법률안 비교표> 참고.
 2) 김승희의원 대표발의(2017).
 3) 윤소하의원 대표발의(2017); 국회예산정책처(2017d).
 4) 전혜숙의원 대표발의(2017); 국회예산정책처(2017e).

나. 아동수당법 제정안

1) 박광온 의원안¹²⁾

아동복지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와는 달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은 OECD 회원국 중 미국, 멕시코, 터키, 우리나라만이 아직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양극화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의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 법안은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아동수당을 국가 재원으로 지급하고,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는 월 20만원,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3조). 아동수당의 수급요건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이하로 한다(안 제5조 제3항). 다만, 소득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에도 양육하는 아동이 셋 이상인 경우에는 셋째 아동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안 제5조 제4항).

아동을 확대하거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되고(안 제6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에게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안 제9조).

아동수당은 양육 가정이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동수당이용권, 즉,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한다(안 제12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19조).

동 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년 15조 3,641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76조 7,133억원(연평균 15조 3,427억원)으로 추계되었다.¹³⁾

12) 이하 내용은 박광온의원 대표발의(2016).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99호) 참조.

13)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비용추계서 1면.

〈표 1-5-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8~2022년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아동수당 (안 제3조 및 제5조)	153,617	154,138	153,918	152,708	152,628	767,010	153,402
아동수당 정보 제공 등 (안 제9조 및 제10조)	24	24	25	25	26	124	25
합계	153,641	154,163	153,943	152,733	152,654	767,133	153,427

주: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6b), p.1.

2) 김부겸 의원안¹⁴⁾

2017년 3월 31일에는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의원이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박광온 의원 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는 동 법안에서는 아동수당의 대상연령을 6세 이상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안 제3조). 다수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광온 의원 안과 비교하여 동 법안에서는 아동수당 지급액을 특정하지 않고, 아동수당위원회가 의결하여 아동수당 지급액을 정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생 순서나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5조). 또한, 아동수당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수당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안 제6조 및 제7조).

〈표 1-5-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8~2022년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아동수당 (안 제5조)	98,952	99,912	99,445	98,123	97,272	493,703	98,741
아동수당위원회 (안 제7조)	0.7	0.7	0.8	0.8	0.8	3.8	0.8
합계	98,953	99,913	99,445	98,123	97,273	493,707	98,741

주: 아동수당의 지급기준이 제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첫째자녀 월20만원, 둘째자녀 월30만원, 셋째자녀 월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7c), p.1.

14) 이하 김부겸의원 대표발의(2017).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532호) 참조.

동 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출산순위별로 매월 20만원에서 4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고, 아동수당위원회 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18년 9조 8,953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49억 3,707억원(연평균 9조 8,741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계 되었다.

〈표 1-5-7〉 제20대 국회 아동수당법 제정안 비교

구분	박광온의원 대표발의안 ¹⁾	김부겸의원 대표발의안 ²⁾
발의일	2016. 10. 7.	2017. 3. 31.
지급대상	12세 이하	6세 이상 12세 이하
지급 금액	0-2세: 월 10만원 3-5세: 월 20만원 6세-12세: 월 30만원	- (아동수당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
지급 방식	아동수당 이용권(바우처)	현금지급
차등지원 여부	연령대별로 차등 지급	출생순서나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 단, 셋째부터는 소득기준 없음 *4인가구기준 약 439만원(2016년)	소득기준 없음
재원 분담	국가 부담	국가 부담
지급 정지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환수	없음	부정수급 환수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비용 추계	연평균 15조 3,427억원	연평균 9조 8,741억원 ^{주1)}
기타	아동수당세 신설(「아동수당세법」 제정)	-

주: 아동수당 지급기준이 제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첫째 자녀 월 20만원, 둘째 자녀 월 30만원, 셋째 자녀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음.

자료: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6b); 국회예산정책처(2016b).

2) 김부겸의원 대표발의(2017); 국회예산정책처(2017c).

다. 기타 제·개정안

2016년 6월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은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은 6세 미만의 아동이며,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부정 수령 시 환수조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안 제10조의2 신설). 다만,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추후 아동수당의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6세 미만 아동수당 도입은 법체계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보건복지위원회, 2016a: p.11).

한편, 2017년 3월 발의된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은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동 법안은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임신가정지원금, 출산가정지원금 등 출산·양육가정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안 제13조부터 제17조). 이상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일정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안 제19조).

II. 해외 사례

아동수당은 91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OECD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아동관련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아동관련 지출 가운데 현금지원은 0.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의 6분의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아직 우리나라가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¹⁵⁾

이하에서는 아동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¹⁶⁾ 중 그 동안 잘 논의되지 않았던 독일과 영국, 그리고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독일은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수당을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영국은 과세제도와 연계하여 수당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문화가 비슷하고,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오래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¹⁷⁾

1. 독일

가. 개관

일반적으로 유럽국가들은 복지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유럽 다수의 국가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도 유럽국가들 중에서 사회복지의 양과 질적 측면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독일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 등의 답안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보육을 위해 많은 국가예산을 들이고 있으며, 아동수당과 같이 가정에서의 경제적 지원 뿐만

-
- 15) 경향신문(2017. 7. 20일자 기사), “한국, 아동 관련 공공지출 OECD 바닥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202117025&code=920100(2018. 8. 7. 인출).
- 16) 해외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에 대해서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 17) 그 동안 해외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자세한 내용은 이선주 외(2006); 최영진(2008); 최성은 외(2009); 유해미(2010); 이순희(2015)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니라 부족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같은 사회인프라의 투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종류로는 아동수당(Kindergeld), 부모수당(Elterngeld), 임신부수당(Mutterschaftsgeld)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5년까지 양육수당(Betreuungsgeld)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혜택이 있었으나, 2015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서 이 수당에 대한 위헌결정¹⁸⁾을 내림에 따라 양육수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 양육수당은 부모가 아동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Kindertagesstätte; Kita)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되던 수당으로, 이 수당이 사라진 대신에 정부는 부족한 양육시설에 대한 시설확충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¹⁹⁾

이렇듯 독일에서도 사회복지의 일환으로서 아동에 대한 수당지급은 많은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적극적이고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뿐만 아니라 망명자, 피난민 등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저출산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양화의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²⁰⁾

나. 아동 관련 수당의 종류

1) 아동수당(Kindergeld)

가) 개요

독일의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당이다. 지급되는 액수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학업이나 직업교육, 대학진학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5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최근 독일사회는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순수 독일계의 국민들이 출산율이 높지 않은 반면, 이민자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¹⁾

18) 1 BvF 2/13, 2015년 7월 21일 결정.

19)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2015년 7월 21일 기사.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wirtschaftspolitik/betreuungsgeld-oder-kita-ausbau-der-streit-ums-geld-13713322.html>(2017. 8. 1. 인출).

20) 독일 AuswandernHandbuch 홈페이지 자료. <https://www.auswandern-handbuch.de/kindergeld-im-ausland/>(2017. 8. 1. 인출).

21) 독일 WELT 2016년 9월 21일 기사,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158294203/Babybo>

세간에서는 이 아동수당이 이민자 가정에 적지 않은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아동수당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수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아동수당은 「독일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EStG)」과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BKGG)」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아동수당에 대한 청구권자가 독일 내에 자신의 주소지가 있거나,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 통상적·업무적 사유로 인해 체류하고 있는 자가 독일 내에서 납세의무는 없더라도, 독일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의무가 있거나(반드시 독일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연금(퇴직)연령이 된 경우, 연방아동수당법에 따라 자신의 자녀를 위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연방아동수당법 제2조 제5호). 예외적으로 아동수당의 청구권자가 외국에서 ‘자원봉사자’, ‘선교사’ 등 자선활동을 하거나 공적 업무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연방아동수당법 제1조 1항).

아동수당에 대한 관할권한과 소송방법에 있어서 독일소득세법에 따른 아동수당사건에 관한 소송은 재정법원(Finanzgericht)이 재판권을 갖고, 독일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사건은 사회법원(Sozialgericht)이 재판권한을 갖는다(연방아동수당법 제15조).

「소득세법」과 「연방아동수당법」에 따른 청구권이 발생하는 사례들에서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연방아동수당법」에 우선한다. 그 외에 유효한 다른 경우는 오직 아동이 「연방아동수당법」에 따라 청구권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동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 그리고 「연방아동수당법」에 따른 청구권자가 높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유효하다(연방아동수당법 제2조 제4항).

〈표 II-1-1〉 독일 연방아동수당법의 내용

「연방아동수당법(BKGG)」		
조문	내용	
제1절 (활동)	제1조	청구권자(§1 Anspruchsberechtigte)
	제2조	아동(의 개념과 범위)(§ 2 Kinder)
	제3조	다수의 청구권과의 병합 (§3 Zusammentreffen mehrerer Ansprüche)
	제4조	아동을 위한 다른 활동(§4 Andere Leistungen für Kinder)

(표 II-1-1 계속)

조문	내용
제1절 (활동)	제5조 청구권의 개시와 종료(\$5 Beginn und Ende des Anspruchs)
	제6조 아동수당의 액수(\$6 Höhe des Kindergeldes)
	제6a조 아동특별수당(\$6a Kinderzuschlag)
	제6b조 교육과 참여에 관한 활동 (\$6b Leistungen für Bildung und Teilhabe)
제2장 (조직과 절차)	제7조 관할권(\$7 Zuständigkeit)
	제7a조 정보전달(\$7a Datenermittlung)
	제8조 재정의 조달(\$8 Aufbringung der Mittel)
	제9조 신청(\$9 Antrag)
	제10조 정보의 의무(\$10 Auskunftspflicht)
	제11조 아동수당과 아동특별수당의 승인 (\$11 Gewährung des Kindergeldes und des Kinderzuschlags)
	제12조 계상(\$12 Aufrechnung)
	제13조 담당부서(\$13 Zuständige Stelle)
	제14조 안내(\$14 Bescheid)
제15조 재판권(\$15 Rechtsweg)	
제3장 (벌칙규정)	제16조 질서위반행위(\$16 Ordnungswidrigkeiten)
제4장 (도과와 종료규정)	제17조 유럽연합의 권리(\$17 Rech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제18조 사회법전의 적용(\$18 Anwendung des Sozialgesetzbuches)
	제19조 도과규정(\$19 Übergangsvorschriften)
	제20조 적용규정(\$20 Anwendungsvorschrift)
	제21조 아동수당을 통한 1983년에서 1995년까지 아동의 최저생계비의 면세에 관한 특별규정 (\$21 Sondervorschrift zur Steuerfreistellung des Existenzminimums eines Kindes in den Veranlagungszeiträumen 1983 bis 1995 durch Kindergeld)
	제22조 연방정부의 보고(\$22 Bericht der Bundesregierung)

자료: 독일연방아동수당법, 독일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gesetze-im-internet.de/bkkg_1996/ (2017. 8. 1. 인출).

나) 아동수당의 신청

자녀를 둔 부모가 독일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외국인이 일정한 목적에 의해 독일에 주소를 두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국적을 불문하고 아동수당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독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의 국적자도 거주허가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절 이하 제62조에서부터 제78조까지 그 규정을 두고 있다.²²⁾ 아동수당을 수

령함에 있어서 개인의 소득차이는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 모든 아동수당의 청구권자는 자신의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액수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수령을 희망할 때는 먼저 부모가 해당 파밀리엔카세(Familienkasse, 연방노동청 산하의 재정담당관공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파밀리엔카세는 별도의 부서로 구성된 경우도 있으나, 지역의 노동청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신청이 늦은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소급하여 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독일연방 조세청, 2017: p.6).

장소적 관할권은 아동수당청구권자의 거주지에 따른다. 아동수당청구권자가 업무상 파견 등의 이유로 자신의 거주지가 외국에 있다면, 파밀리엔카세는 고용주(사업주 혹은 해당 관공서)의 위치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동수당신청권자가 고용주 없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뉘른베르크시의 파밀리엔카세가 관할권을 갖는다(연방아동수당법 제13조).

다) 아동수당의 대상

아동수당은 아이가 출생함과 동시에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 직업학교, 대학교육과 같이 아동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최장 아동이 25세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와는 별도로 아동이 18세를 초과한 후에도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직중임이 노동청에 등록된 경우에는 21세까지 아동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연방아동수당법 제2조 제2항). 또한 대상연령을 초과한 후에도 아동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18세를 초과한 아동에 대하여 25세의 생일이 종료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직업

22) 독일 「소득세법」 제10절(아동수당) 제62조(청구권자;Anspruchsberechtigte), 제63조(아동; Kinder), 제64조(다양한 청구권간의 병합;Zusammentreffen mehrerer Ansprüche), 제65조(아동을 위한 다른 활동;Andere Leistungen für Kinder), 제66조(아동수당, 지급기간의 최고;Höhe des Kindergeldes, Zahlungszeitraum), 제67조(신청;Antrag), 제68조(특수한 협력의무;Besondere Mitwirkungspflichten), 제70조(아동수당의 결정과 지급;Festsetzung und Zahlung des Kindergeldes), 제71조(삭제), 제72조(공공업무종사자에 대한 아동수당의 결정과 지급;Festsetzung und Zahlung des Kindergeldes an Angehörige des öffentlichen Dienstes), 제73조(삭제), 제74조(특수한 경우의 아동수당의 지급;Zahlung des Kindergeldes in Sonderfällen), 제75조(계상;Aufrechnung), 제76조(압류;Pfändung), 제76a조(삭제), 제77조(심리절차에서 비용의 상환;Erstattung von Kosten im Vorverfahren), 제78조(도과규정;Übergangsregelungen). 이상 독일연방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 참조(2017. 8. 1. 인출).

교육방법은 특정한 직업목표에 맞춰야 하고 반드시 목표로 하는 직업의 교육을 위해 필요로 하거나 유용한 혹은 유리한 지식, 능력과 경험 등을 주선했어야 한다. 재취업과 같이 기업의 직업교육, 재교육이나 일반적 교육기관의 입학은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포함된다. 아동수당지급은 늦어도 교육기간의 종료, 기업의 직업교육 혹은 대학교육의 종료에 맞춰져 있고, 직업교육계약이 오랜 기간에 걸쳐 종료되었거나 아동이 대학에서 졸업시험 후에도 아직 대학에 등록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도, 아동은 졸업시험의 종합성적을 통해 공식적인 서면으로 서명함으로써 아동수당의 지급은 종료된다(독일연방 조세청, 2017: p.8).

질병이나 임신으로 인하여 교육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된다. 하지만 모성보호기간(예컨대, 육아휴직기간)의 경과 후에 아동양육으로 인한 중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가 수령하여야 하며, 부모 중 누가 수령 받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고아이거나 부모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의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이 제3자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연방 아동수당법 제6b조 제2항). 다만, ① 신청자와 일촌관계의 아동, 그 밑으로 입양된 아동, ② 부부 일방의 아동(이부/이복형제), 신청자가 자신의 가정에 등록한 동반자의 아동과 손자·손녀, ③ 법적 전제요건에 충족된 경우의 양자 등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아동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 특히 신청자가 자신의 가족과 유사한, 오랜 기간 형성된 인연으로 연결된 경우 그리고 신청자가 아동을 영리목적으로 자신의 가정에 데리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은 피양육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청구가 인정된다. 이 때, 양자나 피양육아동은 자신의 아동과 같이 가정에 속해 있어야 하며, 보호와 양육관계를 생부모에게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신청자 가족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계속해서 양육되고 있다면, 아동은 가정 내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 등록관청에 단순한 등록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으며, 단지 주중에만 아동을 돌보거나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교대로 일정 장소에 체류하는 경우는 가정 내 양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편, 아동의 학업이나 직업교육 혹은 대학교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속된 가정양육으로 보아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독일연방 조세청, 2017: pp.11-12).

라) 아동수당의 수령금액 및 지급기간

아동수당은 2017년까지 첫째, 둘째 아이는 192유로, 셋째 아이는 198유로, 넷

째 아이와 그 이후는 아이 한 명당 223유로를 지급한다. 다만, 2018년에는 이 액수가 일괄 2유로씩 상승한다(소득세법 제66조, 연방아동수당법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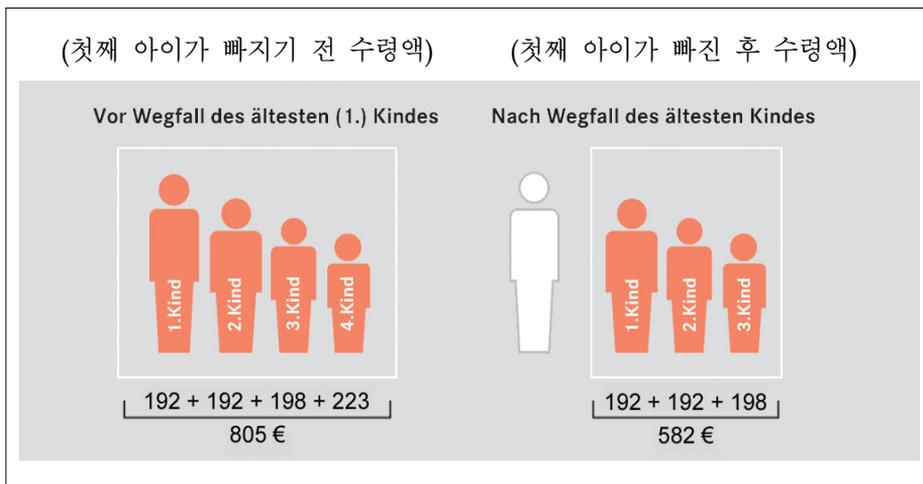
〈표 II-1-2〉 아동수당 지급액

단위: 유로

자녀수	금액(유로)	
	2017년	2018년 부터
첫째	192	194
둘째	192	194
셋째	198	200
넷째와 그 이후 매 아이마다	223	225

주: 1유로=1,332.43원(2017.08.09 15:02 기준).
 자료: 독일연방 조세청(2017). Merkblatt Kindergeld. p.22.

만약 4명의 자녀가 있다면, $(2 \times 192\text{유로}) + (1 \times 198\text{유로}) + (1 \times 223\text{유로}) = 805\text{유로}$ 를 수령 가능하며, 첫째 아이가 더 이상 아동수당의 수령연령이 아닌 경우에는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부모는 223유로가 줄어 든 액수 $(2 \times 192\text{유로}) + (1 \times 198\text{유로}) = 582\text{유로}$ 를 수령하게 된다(독일연방 조세청, 2017: p.22).



자료: 독일연방 조세청(2017). Merkblatt Kindergeld. p.22.

[그림 II-1-1] 아동수당 계산법

마) 장애가 있는 아동의 아동수당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어 성인으로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평생 동안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아동이 25세 생일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 아동으로서 인정받게 된다(연방아동수당법 제2조 제2항 제3호). 종종 사회청(Sozialamt)이 아동수당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아동이 장애로 인하여 기숙사 등의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이를 ‘사회청을 통한 아동수당의 분리(나눔)(Abzweigung des Kindergeldes durch das Sozialamt)’라고 한다. 하지만 부모는 아동을 위한 실질비용을 수령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아동수당은 부모에게 지급된다. 꼭 필요로 하는 생활의 필수요소는 합산하여 일반적인 생활필수품으로 그리고 그 이외의 장애로 인한 필요를 위해(요양시설에서의 거주, 지불된 치료비용 상당의 치료의 필요, 사회법전 제12권에 따른 활동,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우를 위한 총액) 매년 8820유로(2018년 부터는 9,000유로) 상당을 지급한다(Katja Kruse, 2016: p.7 이하 참조).

바) 주무관청(파밀리엔카세)에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따라 부과되는 의무가 있다. 해당 파밀리엔카세에 지체 없이 부모의 상황과 관련된 모든 변동사항 그리고 아동의 상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68조 제1항). 이는 아동수당청구권을 위해 중요하거나, 이미 사유가 제출된 건에 대한 상황변화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한다. 다른 관청(예컨대, 지방정부, 거주등록청, 세무서 등)이나 노동청 혹은 자신의 고용주와 관련된 관청 또는 상급관청과 같이 파밀리엔카세 외에 다른 장소에 신고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독일연방 조세청, 2017: p.8).

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아동을 통해 파밀리엔카세에 전달되어진 경우 또는 부모의 신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때이더라도 변경사항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아동수당청구권상에 소급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아동수당소득의 종료 후에 부모에게 알려진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도 파밀리엔카세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자 등이 사회복지사업과 연결되어 있어, 아동수당이 이와 연계되어 계산된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사실들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수당 반환청구의 경우에 사회복지사업은 추후에 이전 달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된다. 그리고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죄행위 혹은 규정위반으로 간주되며, 연방아동수당법 제16조에 따라 처벌 받는다(독일연방 조세청, 2017: p.8).

사) 아동수당과 아동비과세(세제혜택 지원)

(1) 아동비과세의 개관

아동수당은 아동의 최저생계비에 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복지의 일환으로서 일반 가정생활의 평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일반가정의 평등을 위해 책정되는 아동의 최저생계비는 독일에서 이중 시스템을 통해 보장된다. 하나는 직접 부모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아동수당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세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혜택을 주는 '아동비과세(Kinderfreibetrag)'가 이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31조, 제32조 제6항).²³⁾

아동비과세는 아동의 후원이라는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세청의 원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아동비과세는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의 한 종류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의 최저생계비를 위한 국가의 평등화 혹은 균등지급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아동수당은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혹은 전혀 내지 않는 가정에게 유용하며, 아동비과세의 공제기간 동안에 이러한 세제혜택은 높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가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아동수당과 아동비과세의 차이는 아동수당이 매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에 반하여 아동비과세는 비과세로서 세액산정을 통해 제공된다. 조세청(Finanzamt)은 소위 '혜택조사(Günstigerprüfung)'를 통해 부모의 별다른 신청 없이도 자동적으로 아동수당 혹은 아동비과세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부모의 소득세증빙에 관하여 아동비과세와 아동수당은 납세의무자 부모를 위해 재정적 측면에서 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서는 관청이 실시하는 소득세액의 산정에 있어서 아동비과세액의 공제액이 아동수당보다 유용한지 아닌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아동수당의 현금수령액이 소득세 감면 혜택보다 비용이 큰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²⁴⁾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소득세의 세액산정에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부모일방에게 고려되는 액수는 아동 1명당 1년에 2,358유로의 비과세액으로 책정된다. 이 액수의 산정기준은 아동의 중립적인 최저생계의 보장을 위한

23) Kindergeld.org 홈페이지; <http://www.kindergeld.org/kinderfreibetrag.html>; (2017. 8. 1. 인출)

24) Kindergeld.info 홈페이지; <http://www.kindergeld.info/kinderfreibetrag.html> (2017년 8. 1. 인출)

것이다. 이러한 최저생계비 외에도 납세의무자에게 추가적으로 아동의 양육, 교육,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비과세액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은 1,320유로이며, 전체 공제가능한 금액은 7,258유로이다.²⁵⁾ 세금부담은 부과되는 소득세를 통해 경감하기 때문에 전체 비과세액은 늘어난다. 이러한 ‘혜택 조사’를 통해 받게 되는 세제혜택이 아동비과세액을 근거로 아동수당보다 높다면, 아동수당의 청구권은 사라지고, 아동수당을 대신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에서 공제된다.(Katja Kruse, 2016: p.35 이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아동비과세액에 대한 실무상의 합법성에 관한 설명에서, 입법자는 최저생계비의 세금면제를 아동수당의 지급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²⁶⁾

(2) 부부에 대한 아동비과세액

부부가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저생계비로 2,358유로 그리고 양육, 교육, (직업)훈련 등을 목적으로 최고 1,32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부부 양쪽이 합산하여 아이 1명당 2017년에 총 7,356유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비과세액은 납세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적용되는데, 분할과세표(부부합산 기준)에 따른 아동비과세액의 과세 기준금액은 약 63,500유로이고, 기본과세표(부모1인 기준)에 따르면 약 33,500유로이다. 부모의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동수당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모에게 더욱 유리하다. 이는 실무상 아동비과세액은 두 명의 납세의무자 부부에게 더욱 유리한 측면이 있고, 아동비과세액의 과세는 합산하여 세액산정이 이루어져 63,500유로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가정에게 유리하고, 독신자에게는 기본과세표에 따라 33,500유로 이상의 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아동비과세액의 지속기간은 아동수당의 지급기간과 동일하며, 아동수당의 수령 가능 액수가 부모에게 더 유리하게 된 경우와 같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세의 변화에 기초하여 유리한 결과를 반영한 변동이 가능하다.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부부에게는 아동비과세액에서 절반에 한하여 권한이 있다.

25) 2017년 기준이며, 이 금액은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8년 까지를 기준으로 매년 70-100유로 정도의 수준에서 상승함(2014년 7,008유로, 2015년 7,152유로, 2016 7,248유로, 2018년 7,428유로), Kindergel.info홈페이지, <http://www.kindergeld.info/kinderfreibetrag.html> (2017년 8. 1. 인출)

26) Beschluss vom 10. November 1998 - 2 BvR 1057/91, BVerfGE 43, 108 - Kinderfreibeträge (<http://www.servat.unibe.ch/dfr/bv043108.html>)(2017년. 8. 1. 인출).

또한 이혼하거나 별거한 부부의 경우 부부일방이 조세청에 신청하고, 다른 일방이 자신의 아동비과세액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일방의 의무가 최소 75%정도이고, 다른 부모일방이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동비과세에 관한 추가적인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아동비과세액도 양육, 교육, 직업훈련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비과세액과 마찬가지로 전용된다.²⁷⁾

2) 부모수당(Elterngeld)

부모수당은 모든 부모가 아이를 출생한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의 전제조건은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모수당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부모는 부분적으로 시간제노동을 할 수 있다. 부모수당은 지급 방식에 있어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는 부모가 순서대로 선택할 수 있다. 부모수당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연방부모수당/부모휴직법(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BEEG)」에 규정되어 있다.

〈표 II-1-3〉 연방부모수당/부모휴직법(BEEG)의 내용

연방부모수당/부모휴직법(BEEG)	
조문	내용
제1절 (부모수당)	제1조 권리자(§1 Berechtigte)
	제2조 부모수당의 최고지급액(§2 Höhe des Elterngeldes)
	제2a조 형제자매보너스와 다생아추가수당(§2a Geschwisterbonus und Mehrlingszuschlag)
	제2b조 책정기간(§2b Bemessungszeitraum)
	제2c조 비자립 생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2c Einkommen aus nichtselbstständiger Erwerbstätigkeit)
	제2d조 자립 생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2d Einkommen aus selbstständiger Erwerbstätigkeit)
	제2e조 조세에 관한 세액(§2e Abzüge für Steuern)
	제2f조 사회보험료에 관한 세액(§2f Abzüge für Sozialabgaben)
	제3조 다른 소득에 관한 계산(§3 Anrechnung von anderen Einnahmen)
	제4조 수입의 종류와 지속기간(§4 Art und Dauer des Bezugs)

27) Kindergeld.org 홈페이지, <http://www.kindergeld.org/kinderfreibetrag.html>(2017. 8. 1. 인출)

(표 II-1-3 계속)

조문		내용
제2장 (양육수당) *독일연방 헌재에 의해 위헌 결정됨	제4a조	권리자(\$4a Berechtigte)
	제4b조	양육수당의 최고(\$4b Höhe des Betreuungsgeldes)
	제4c조	다른 활동의 계산(\$4c Anrechnung von anderen Leistungen)
	제4d조	지급기간(\$4d Bezugszeitraum)
제3장 (절차와 조직)	제5조	청구권들의 병합(\$5 Zusammentreffen von Ansprüchen)
	제6조	지급(\$6 Auszahlung)
	제7조	신청소(\$7 Antragstellung)
	제8조	정보의무, 부관(\$8 Auskunftspflicht, Nebenbestimmungen)
	제9조	소득과 노동시간의 증명, 고용주의 정보의무 (\$9 Einkommens- und Arbeitszeitnachweis, Auskunftspflicht des Arbeitgebers)
	제10조	다른 사회복지와의 관계(\$10 Verhältnis zu anderen Sozialleistungen)
	제11조	양육의무(\$11 Unterhaltspflichten)
	제12조	관할권; 재정의 조달(\$12 Zuständigkeit; Aufbringung der Mittel)
	제13조	재판권(\$13 Rechtsweg)
	제14조	벌금규정(\$14 Bußgeldvorschriften)
제4장 (노동자를 위한 부모휴가)	제15조	부모휴가의 청구권(\$15 Anspruch auf Elternzeit)
	제16조	부모휴가의 이용(\$16 Inanspruchnahme der Elternzeit)
	제17조	휴가(\$ 17 Urlaub)
	제18조	해고로부터의 보호(\$ 18 Kündigungsschutz)
	제19조	부모휴가의 종료에 대한 해지 (\$19 Kündigung zum Ende der Elternzeit)
	제20조	가내공업에서의 직업교육중인 피고용인 (\$20 Zur Berufsbildung Beschäftigte, in Heimarbeit Beschäftigte)
제5절 (통계와 종결절차)	제21조	기한이 정해진 노동계약(\$21 Befristete Arbeitsverträge)
	제22조	연방통계(\$ 22 Bundesstatistik)
	제23조	정보의무; 연방통계청의 정보전달 (\$23 Auskunftspflicht; Datenübermittlung an das Statistische Bundesamt)
	제24조	연방통계청의 통계결과지표의 전달 (\$24 Übermittlung von Tabellen mit statistischen Ergebnissen durch das Statistische Bundesamt)

(표 II-1-3 계속)

조문		내용
제5절 (통계와 종결절차	제24a조	연방통계청의 세부자료의 전달 (§24a Übermittlung von Einzelangaben durch das Statistische Bundesamt)
	제25조	알림(§25 Bericht)
	제26조	노동법전의 적용 (§ 26 Anwendung der Bücher des Sozialgesetzbuches)
	제27조	도과규정(§27 Übergangsvorschrift)

자료: 독일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eg/BJNR274810006.html>
(2017년. 8. 1. 인출).

가) 부모수당의 대상자

부모가 아이를 출생한 후 가정 내에서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가정주부, 학생, 입양부모 등이다. 만약 부모가 장애를 갖고 있고,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양육에 대해 위임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3촌 이내의 친족은 숙부, 숙모, 자매, 형제, 조카, 조부모, 고조부모 등이다(연방부모수당/부모휴직법 제1조)(독일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2016: p.7).

나) 부모수당 지급액

부모수당은 월평균수입의 67퍼센트까지 지급된다. 최고액은 1,800유로이고, 이 이상으로 부모가 수령할 수는 없다. 아이를 출생하기 전에 부모가 근로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최저액인 300유로를 지급받게 된다. 부모수당은 부모가 매우 소득이 낮거나, 아이가 많거나, 쌍둥이 혹은 세쌍둥이와 같은 다둥이를 낳은 경우 그 금액이 상승하게 된다(연방부모수당/부모휴직법 제2조).

다) 형제자매보너스(Geschwisterbonus)

청구권한이 있는 자가 가정에 2명의 아이(3세 이하의)가 있거나, 3명 혹은 그 이상의 아이가 있는 경우(이 경우 6세 이하) 청구권자는 부모수당에서 추가적으로 10퍼센트의 형제자매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소한 75유로, 최대한 180유로이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최소한 3세 이하의 아이 혹은 6세 이하의 2명의 아이 혹은 14세 이하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이다.

이후의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는 추가적으로 형제자매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연방부모수당/휴직법 제2a조).

라) 부모수당의 신청

부모수당은 거주하는 지역의 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수당을 소급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 후 지난 3개월만 수령이 가능하다. 부모수당을 위한 2가지 상이한 신청방법이 있는데, 아이가 언제 출생하였는지에 따른 기준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 출생과 2015년 6월 30일 이전까지의 출생으로 나뉜다. 부모는 해당지역 또는 지역에 상관없이 부모수당 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연방부모수당/휴직법 제7조)(독일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2016: p.52).

마) 부모수당의 수령기간

부모는 아이의 출생시점부터 부모수당을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임신 부수당을 받는 경우에, 부모는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만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친은 부모수당-휴직을 나눌 수 있는데, 예컨대, 어머니가 4개월간 수령 혹은 사용을 하고 그 후에 아버지가 남은 10개월을 수령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연방부모수당/휴직법 제4조).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면, 최대 12개월 동안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전체인 14개월 동안 부모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아이의 출생 전에 부모가 노동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동안만 부모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중에 한명이 장애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14개월 동안의 부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부모 중 한명이 장애 혹은 심각한 질병을 지니고 있어 아이를 양육 할 수 없고, 오직 줄어드는 소득만을 얻는 경우이다.²⁸⁾

바) 시간제노동과 부모수당

부모가 시간제노동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는 주당 30시간까지 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부모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모수당이 줄어들게 된다(연방부모수당/휴가법 제1조 제5호).

28) www.elterngeld.net 홈페이지, <https://www.elterngeld.net/elterngeld-bezugszeitraum.html>; (2017. 8. 1. 인출).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아이를 출생한 모든 부모들은 부모수당(기본적 부모수당)과 부모수당플러스 간에 선택을 할 수 있다. 부모수당플러스는 아이의 출생 후에 빠르게 시간제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데, 부모가 28개월까지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모수당플러스를 받게 되는데, 세후의 실수령액 기준 최소 150유로 최대 900유로까지 매월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독일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2016: p.14).

부모는 부모수당플러스와 일반적인 부모수당 중에서 순서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의 출생 후에 첫 3달 동안 집에서 아이의 곁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 기간에는 3개월 부모수당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일을 시작하여 부모수당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독일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2016: pp.22-24).

사) 동반자보너스(Partnerschaftsbonus)

동반자관계보너스를 통하여 부모는 4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부모수당플러스를 수령할 수 있다. 그 전제조건은 매우 엄격하고, 매우 명확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양 부모가 동시에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고, 정확히 주당 25~30시간 사이에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아이가 14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어질 수 있다(연방부모수당/휴가법 제4조 제4항).

3) 임신부수당(Mutterschaftsgeld)

임산부수당은 출생 전후의 여성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실업상태임을 관청에 신고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임신부수당은 공보험 혹은 연방보험청에서 지급하며, 고용주가 수당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독일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2016: p.19).

가) 임신부수당의 전제조건과 수령방법

임산부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한 상태의 여성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자신이 실업상태에 있음을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여야 한다. 이러한 여성은 '임산부보호(Mutterschutz)'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임신부보호는 아이의 출생 6주 전에 시작하고 8주 후에 종료한다. 만약 임신부가 조산을 하였거나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았다면, 임신부보호는 출산 후 12주로 연장된다. 임신부보호기간 동안에 임신부는 임신부수당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임신부는 직업당 450유로에 해당하는 임신부수당의 청구권을 갖는다. 임신부수당의 청구권에 대하여 임신부는 추가적으로 고용주에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수당은 전체 임신부보호기간에 해당한다. 장애가 있는 임신부를 위한 다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기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경우에도 특별히 임신부를 위한 일반적인 규정사항은 바뀌지 않는다. 임신부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신부는 추가서류를 자신의 공공보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 혹은 민간보험가입자는 연방보험청에 추가서류를 제출한다. 추가서류에 관하여 언제 아이를 출생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 혹은 출산보모를 통해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²⁹⁾

나) 임신부수당의 지급액과 고용주에 의한 수당

공공보험가입자인 임신부는 매일 직업마다 13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임산부수당법 제14조 제1항). 민간보험사는 임신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임신부는 관련법에 따라 임신부보호기간동안에 재정적으로 더 악화된 상태에 이르면 안된다. 그 때문에 연방보험청이 민간 혹은 가족보험가입 임신부에게 1회 210유로까지 지급한다(임산부수당법 제13조 제2항).³⁰⁾

고용주는 통상적으로 매일 실수령임금에서 13유로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임신부가 매일 63유로를 벌었다면, 고용주가 50유로를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나머지 13유로를 매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중요한 기본원칙은 임신부보호기간에 여성이 재정적으로 악화되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가정주부, 자영업자(조건에 따라 다름), 그리고 입양모는 임신부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³¹⁾

29) Kindergeld.info홈페이지, <http://www.kindergeld.info/mutterschaftsgeld.html>(2017. 8. 1. 인출).

30) 독일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www.familien-wegweiser.de/wegweiser/Familie-regional/Mutterschaftsgeld/mutterschaftsgeld,did=40164.html>(2017. 8. 1. 인출).

31) 연방연합회 AWO 홈페이지, <http://awo-schwanger.de/finanzielle-hilfen/#mutterschutz>(2017. 8. 1. 인출).

2. 일본

가. 개관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에 시작되었다(김경석, 2012: p.25).

이후 지급대상연령, 지급액, 소득제한여부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5세 미만의 셋째 이후 아동이 지급 대상이었으며(부모 소득에 따른 제한 있음), 금액은 월 3000엔³²⁾이었다. 2000년대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6세)까지 확대되었으며, 2004년에는 9세까지 대상연령이 확대되었다(김경석, 2012: p.26). 특히, 2009년 민주당 집권과 함께 소득제한 삭제, 지급금액 인상 등 확대가 대폭 이루어지게 된다. 즉, 기존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범위를 중학교 졸업까지의 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지급액도 월 13,000엔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동일본지진의 복구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소득제한을 부활하는 등 제도 규모를 다소 축소하였다(김성아 외, 2017: p.91).

〈표 II-2-1〉 최근 일본 아동수당제도 변화

구분	아동수당법 (2009년 이전)	아이수당법 (2010.4~2011.9)	아이수당 특별조치법 (2011.10~2012.3)	아동수당법 (2012. 3월 이후)
지급대상 및 지급액 (매월)	1) 0~3세미만: 10,000엔 2) 3세~초등학교 수료 전: -첫째·둘째:5,000엔 -셋째이후:10,000엔 3) 중학생: 지급하지 않음	0세~중학생: 13,000엔	1) 0~3세미만:15,000엔 2)3세~초등수료 전: -첫째·둘째:10,000엔 -셋째 이후:15,000엔 3) 중학생:10,000엔	1) 0~3세미만:15,000엔 2) 3세~초등 수료 전: -첫째·둘째:10,000엔 -셋째 이후:15,000엔 3) 중학생:10,000엔 4) 소득제한한도액이 넘는 가정:5,000엔
급부총액	1조엔	2.7조엔	2.6조엔	2.3조엔

32) 100엔=1,031.96원(2017.08.09 15:02 기준).

(표 II-2-1 계속)

구분	아동수당법 (2009년 이전)	아이수당법 (2010.4~2011.9)	아이수당 특별조치법 (2011.10~2012.3)	아동수당법 (2012. 3월 이후)
소득제한	※부양가족 3명 기준 1) 피용자: 연소득 860만엔 2) 비피용자: 연소득 780만엔	소득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부양가족 3명 기준: 연소득 960만엔
자녀의 거주지에 따른 지급여부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지급		유학을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	
부모가 별거중인 경우	자녀의 생활비를 주로 부담하는 자에게 지급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	
보호시설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지급	미지급	안심아이기급 으로 지급	시설 설치자 등에게 지급	
기타			1)보육료를 아동수당에서 징수할 수 있음 2)아동수당 신청시 동의하는 경우 학교급식비 등을 아동수당에서 납부 가능	

자료: 김경석(2012). 일본의 아동수당법 개정. pp.33-34. <표 2> 일부 수정·보완.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현재의 아동수당법은 2012년 3월에 전면 개정되고, 2016년 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다.³³⁾

아동수당법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아동수당 지급, 제3장 비용, 제4장 보칙(기타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는 아동수당법의 목적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33) 이하에서 설명하는 일본의 아동수당법(児童手当法)에 대해서는 일본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law.e-gov.go.jp>)에서 인출하였음(2017. 8. 2. 인출). 자세한 주소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11-2-2〉 일본의 아동수당법

규정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目的)
	제2조	수급자의 책무 (受給者の責務)
	제3조	정의 (定義)
제2장 아동수당 지급	제4조	지급요건 (支給要件)
	제5조	
	제6조	아동수당액 (児童手当の額)
	제7조	자격인정 (認定)
	제8조	지급 및 지불 (支給及び支拂)
	제9조	아동수당 액수의 개정 (児童手当の額の改定)
	제10조	지급제한 (支給の制限)
	제11조	
	제12조	미지급 아동수당 (未支拂の児童手当)
	제13조	지불의 조정 (支拂の調整)
	제14조	부정이득 징수 (不正利得の徴收)
	제15조	수급권 보호 (受給權の保護)
	제16조	공과의 금지 (公課の禁止)
	제17조	공무원에 관한 특례 (公務員に關する特例)
	제3장 비용	제18조
제19조		시정촌에 대한 교부 (市町村に對する交付)
제4장 잡칙	제20조	아동수당에 관한 기부 (児童手当に係る寄附)
	제21조	수급자격자 신청에 의한 학교급식비 등의 징수
	제22조	등 (受給資格者の申出による學校給食費等の徴收等)
	제22조의2	시설 등 수급자격자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인 경우 아동수당 취급 (施設等受給資格者が國又は地方公共団体である場合の児童手当の取扱い)
	제23조	시효 (時効)
	제24조	기간계산 (期間の計算)
	제25조	삭제 削除
	제26조	신고 (届出)
	제27조	조사 (調査)
	제28조	자료제공 등 (資料の提供等)
	제29조	보고 등 (報告等)
	제29조의2	사무의 구분 (事務の區分)
	제30조	실시명령 (實施命令)
	제31조	벌칙 (罰則)

자료: 일본 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e%99%93%b6%8e%e8%93%96%96%40&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46HO073&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2017. 8. 6. 인출).

이하에서는 제2장에 규정된 지급대상과 요건, 액수와 신청절차 등에 대한 내용과 제3장에 규정된 아동수당 재원의 분담과 교부금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중학교 졸업까지(15세 생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감독·보호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아동이 일본 국내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내각부, 2017: p.1). 다만, 유학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유학을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 국내 주소가 없어지는 전날까지 일본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교육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일본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부모가 이혼 등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며,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모가 일본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지정하면, 그 자에게 지급한다. 그 밖에 아동을 양육하는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후견인이,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한자, 수양부모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양부모 등이 지급자가 된다(일본 내각부, 2017: p.2).

다. 아동수당 지급액

아동수당은 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일률적으로 15,000엔을 지급하며, 3살 이상 초등학교 수료까지의 아동의 경우 첫째나 둘째인 경우에는 10,000엔을 지급하며, 셋째 이후인 경우에는 15,000엔을 지급한다. 그리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00엔을 지급한다. 주의할 점은 아동수당제도상의 아동은 18세가 된 이후 3월 31일이 되기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셋째의 경우 18세 이하의 형제자매 중 셋째인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소득한도액 미만으로 3명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그 연령이 16세, 14세, 11세이면, 14세인 아동은 중학생으로 10,000엔, 11세 아동은 초등학교 졸업 전의 셋째가 되어 15,000엔을 지급 받는다. 만약 아동의 연령이 각각 19세, 14세, 11세인 경우 19세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1세 아동은 초등학교 졸업 전의 둘째가

되어 10,000엔을 지급 받는다.³⁴⁾

〈표 II-2-3〉 아동수당 지급액

아동 연령	아동수당 금액 (1명당 월 지급액)
3살 미만	일률 15,000엔
3살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	10,000엔 (셋째부터는 15,000엔)
중학생	일률 10,000엔

자료: 일본 내각부(2017). 일본 아동수당 제도 안내 리플릿, p.1.

한편, 일본은 소득에 따른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법 제5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의 소득이 소득제한한도액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급부로 월 5,000엔을 지급한다. 소득기준이 되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표 II-2-4〉 소득제한한도액

부양가족 수	소득제한한도액 (만 엔)	수입액 표준 (만 엔)
0명	622.0	833.3
1명	660.0	875.6
2명	698.0	917.8
3명	736.0	960.0
4명	774.0	1002.1
5명	812.0	1042.1

주: 1) 수입액 표준은 급여수입만 계산한 것임.

2)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노인공제대상배우자 또는 노인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소득제한 한도액은 상기 금액에 해당 노인공제대상배우자 또는 노인부양가족 1명 당 6만 엔을 가산한 금액임.

3)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일 경우 소득제한한도액은 5명을 넘은 한명 당 38만 엔(부양가족 등이 노인공제대상배우자 또는 노인부양가족일 경우 44만 엔)을 가산한 금액임.

자료: 일본 내각부(2017). 일본 아동수당 제도 안내 리플릿, p.5.

라. 아동수당의 신청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 아동이 출생했거나, 전입을 한 경우 해당 주소지의 행정청(시·정·촌)에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법 제7조).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다만, 출생일이나 전출예정

34) 일본 교토부 홈페이지, <http://www.city.kyoto.lg.jp/hagukumi/cmsfiles/contents/0000182/182951/nihongo.pdf>(2017. 8. 1. 인출).

일 등(이하 “사실발생일”이라 함)이 월말에 가까운 경우에는 신청일이 다음 달이 되어도 사실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라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 시 지정된 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되며, 원칙은 매해 6월, 10월, 2월에 각각의 전 월분(총 4개월분)까지 수당을 지급한다.³⁵⁾

한편,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시정촌(우리나라 시·군·구)에서 보육료나 학교급식비 등을 아동수당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수급자가 다음세대를 짊어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아동수당법 제20조 및 제21조).

마. 아동수당 지급의 제한 및 정지

아동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명령 등을 따르지 않거나,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아동수당법 제10조). 또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신고 등 신고의무와 서류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아동수당법 제11조).

〈표 II-2-5〉 아동수당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주된 신고 사유
1. 주소가 변경된 경우(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새로운 주소의 관할행정기관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2. 신청자 본인 또는 대상 아동이 출국하는 경우
3. 아동 양육을 하지 않게 된 경우
4. 아동과 별거하게 된 경우
5. 출생 및 사망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
6. 입금계좌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입금계좌는 신청자 본인의 계좌에 한함)
7. 수급자가 공무원인 경우

자료: 일본 교토부 홈페이지, <http://www.city.kyoto.lg.jp/hagukumi/cmsfiles/contents/0000182/182951/nihongo.pdf>(2017. 8. 1. 인출).

35) 일본 교토부 홈페이지, <http://www.city.kyoto.lg.jp/hagukumi/cmsfiles/contents/0000182/182951/nihongo.pdf>(2017. 8. 1. 인출).

한편, 아동이 15세가 된 후 최초의 3월 31일을 맞이한 경우, 이혼, 구금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되었을 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종료된다. 또한 수급자가 다른 시정촌으로 이사한 경우와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진출처에 수당신청을 해야 한다. 이상의 경우에도 해당 시정촌에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아동수당을 수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반납하게 된다.

바. 아동수당 비용 부담

아동수당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정촌),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비용부담의 형태는 수급자가 피고용자³⁶⁾인지, 비피고용자(자영업자 등)인지, 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피고용자의 경우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수당은 사업주가 15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45분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부담하며, 4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각각 부담한다(아동수당법 제18조 제1항). 3세 이상 중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한 수당은 국가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며,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각각 부담한다(아동수당법 제18조 제2항).

피고용자가 아닌 자(이하 “비피고용자”라 한다)에 대한 아동수당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며,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각각 부담한다(아동수당법 제18조 제3항).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관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즉, 각 부처의 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아동수당은 국가가,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해당 도도부현이, 시정촌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아동수당은 해당 시정촌이 전액 부담한다(아동수당법 제18조 제4항).

36) 「어린이·육아지원법(子ども・子育て支援法)」 제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납부할 의무를 지닌 피보험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아동수당법 제18조.

〈표 II-2-6〉 아동수당의 비용부담

구분	아동연령	부담비율			
		사업주	국가	지방	
				도도부현	시정촌
피고용자	0~3세 미만	7/15	16/45	4/45	4/45
	3세 이상 중학교 졸업 전	-	2/3	1/6	1/6
비피고용자	0세 이상 중학교 졸업 전	-	2/3	1/6	1/6
공무원	0세 이상 중학교 졸업 전	-	소속관청이 전액부담		

자료: 전일주·최영진(2015). 일본 아동수당법의 내용과 시사점, p.196 <표 3> 일부 수정.

3. 영국

가. 개관

현재의 아동수당(Child Benefit) 제도는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과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1977년 4월에 도입되었다. 2015년 8월 31일자로 약 7백2십만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1천2백만명 이상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다. 영국의 아동수당은 첫째 자녀에게 가장 높은 액수로 지급하며, 그 이후의 자녀들은 더 낮은 액수로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다른 수당 및 세금 크레딧(tax credits)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6: p.20).

영국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여러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아동수당과 보호자수당(guardian's allowance)은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다(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6: p.19). 그 밖에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성급여(Maternity Pay)와 아버지급여(paternal pay), 입양수당(adoption pay) 등은 근로자이며 일정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지급된다. 한편, 안심출산보조금(Sure Start maternity grants)은 새롭게 어머니가 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금으로 사회기금(Social Fund)에서 지급된다(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6: p.19). 이상의 제도들에 대해 과세여부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처럼 혜택 당사자가 재정을 부담(기여제, 寄與制)하는지 여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지 여부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3-1〉 2015-2016 영국의 양육지원 수당 (Benefits for families with children) 현황

	혜택(benefit)	T	C	M	신청인, 2015-16 ¹⁾	지출, 2015-16(£m) ²⁾
1	아동수당(Child benefit)	×	×	√	7,153,935 ³⁾	11,281 ⁴⁾
2	보호자수당 (Guardian's allowance)	×	×	×	해당 없음	2 ⁴⁾
3	법적 모성급여, 아버지급여 및 입양수당 (Statutory maternity, paternity, shared parental and adoption pay)	√	√	×	269,000 ⁵⁾	2,449
4	모성수당 (Maternity allowance)	×	√	×	63,000	443
5	안심출산보조금 (Sure Start maternity grant)	×	×	√	59,400 ⁶⁾	30 ⁶⁾

주: T=Taxable(과세), C=Contributory(기여제), M=Means-tested(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1) 신청인 수치는 별도로 기술하지 않은 한, 2015-2016년 동안 신청한 자의 수입.
- 2) 추계치.
- 3) 이 수치는 2015년 8월 31일 기준 총 12,420,785명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수를 말함. HMRC(2015), 아동수당 통계 분석(Child Benefit Statistics Geographical Analysi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benefit-statistics-geographical-analysis-august-2015>.
- 4) 이 수치는 아동수당과 보호자수당 두 개의 수당 사이에 총 비용 구분이 GB와 UK에 대해서 같다는 것을 가정함. HMRC(2016). 2015-16 연간 보고서 및 회계,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39608/HMRC_Annual_Report_and_Account_2015-16-web.pdf.
- 5) 이 수치는 법적 모성수당(statutory maternity pay)에만 해당함.
- 6) 사회기금 연간 보고서 2015-16,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52482/social-fund-annual-report-2015-2016.pdf.

자료: Institute for Fiscal Studies(2016). A Survey of the UK Benefit System. p.20.

나.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아동의 부모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하 “부모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된다. 입양 과정인 경우 입양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아동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곧바로 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국적 역시 아동수당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아동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경우(fostering)에도 지역협의회(the local council)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³⁷⁾ 그 밖에도 친척 등 지인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역협의회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을 수 있다. 한 아동에 대해서는 한 명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을 잃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보호자 수당(Guardian's Allowance)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³⁸⁾

아동은 16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만, 20세 미만의 경우에도 승인된 교육(full-time education)이나 직업훈련(full-time training)을 받고 있다면 수급이 가능하다. 이 때 해당 아동이 일주일에 24시간 이상 유급근로를 시작하거나 승인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견습생(apprenticeship)을 시작하거나 자신의 권리에 따른 특정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은 지급이 정지된다.³⁹⁾ 만약 16세 또는 17세 아동이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그만두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서비스 등에 등록하면 아동수당은 20주 동안 지급된다.⁴⁰⁾

한편, 아동수당은 주거지가(main home) 영국(UK)이고, 영국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또한,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만, 아동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옷, 생일과 크리스마스 선물, 음식, 용돈 등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⁴¹⁾

다. 아동수당 지급액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으로 1년에 약 1,800 파운드를 받게 되는데,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한 주에 20.70 파운드가 지급되며, 첫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각각 한 주당 13.70 파운드가 지급된다.

37) 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child-benefit/eligibility>(2017. 8. 1. 인출).

38) 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child-benefit/eligibility>(2017. 8. 1. 인출).

39) 영국 Money Advice Service 홈페이지 <https://www.moneyadviceservice.org.uk/en/articles/claiming-child-benefit>(2017. 8. 1. 인출).

40) 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child-benefit/eligibility>(2017. 8. 1. 인출).

41) 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child-benefit/eligibility>(2017. 8. 1. 인출).

〈표 II-3-2〉 영국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액수

아동수당 지급대상	액수(주당, weekly)
첫째 혹은 외동(Eldest or only child)	£20.70
이후 자녀(Additional children)	£13.70 (per child)

주: 1파운드=1,474.16원(2017.08.09 15:02 기준).

자료: 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child-benefit-rates>(2017. 8. 1. 인출).

라. 해외 거주 의 경우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영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1) 단기 해외 거주

영국을 떠나 단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표 II-3-3〉 해외 단기체류 시 아동수당 지급 조건 및 기간

해외체류 이유	아동수당 지급기간
가족의 사망	최대 12주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한 치료	최대 12주
기타 이유(예: 휴일 또는 비즈니스)	최대 8주

자료: 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child-benefit-abroad>(2017. 8. 1. 인출).

2) 장기 해외 거주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도 특정국가에 거주하거나 영국왕실을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자(Crown servant)는 계속해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럽경제지역(EEA)과 스위스에서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을 내거나 영국에서 구직자 수당(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무소득 급여(Incapacity Benefit), 고용수당(Contribution-bas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국민연금(State Pension), 미망인연금(Bereavement Allowance/Widow's Pension), 산업재해급여(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중 어느 하나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영국과 사회보장협약을 맺은 국가에 거주

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⁴²⁾

마. 아동수당 지급의 제한

영국은 2013년 기존에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고소득 가정에는 지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⁴³⁾ 이에 따라,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연 5만 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에 대해 과세가 되어 일부를 반납하게 되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6만 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즉, 소득이 연 5만 파운드 이상 6만 파운드 이하의 경우에는 5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100파운드 마다 아동수당의 1%를 반납해야 하며, 6만 파운드 이상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았더라도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아예 신청하지 않게 될 것이다.⁴⁴⁾ 결국 영국정부는 과세소득이 6만 파운드 이상인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2014-15부터 매년 1억7천만 파운드를 아낄 것으로 예상하였다.⁴⁵⁾

다만, 이처럼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은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선 아동의 보호자 중 가장 높은 소득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아동수당 수혜 자격을 판단한다는 점이다. 다른 수당의 경우 지원 수혜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가족 소득을 계산하는데 반해, 아동수당은 한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명의 소득원이 있는 가정과 두 명의 소득원이 있는 가정(예컨대, 맞벌이) 사이에 불평등을 야기시켰다(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6: p.21). 예컨대, 두 명의 소득원(부부 등)으로부터 총 100,000파운드의 소득이 있는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단일 소득원으로부터 총 60,000파운드의 소득이 있는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42) 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child-benefit-abroad>(2017. 8. 1. 인출).

43) 프레시안 2016. 12. 16일자 기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6310&ref=nav_search(2017. 8. 1. 인출).

44) 영국 Money Advice Service 홈페이지 <https://www.moneyadviceservice.org.uk/en/articles/changes-to-child-benefit-from-2013>(2017. 8. 1. 인출).

45) 영국 재무부 2012년 3월 예산안,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dget-2012>; Institute for Fiscal Studies(2016). A Survey of the UK Benefit System, p.21에서 재인용.

4. 시사점

이상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독일과 영국,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4-1〉 독일, 영국, 일본 아동수당 제도 비교

국 가 (도입년도)	지급연령	지급내용(월 기준)
독일 (1954)	18세 미만 아동 (경우에 따라 25세까지 지급 가능)	▶ 자녀수에 따라 차등 - 첫째, 둘째 자녀: 192유로(약 25만원) - 셋째 자녀: 198유로(약 26만원) - 넷째 자녀: 223유로(약 29만원)
일본 (1972)	만15세(중학생) 이하 아동	▶ 연령, 자녀수, 소득수준별 차등 - 만3세 미만: 1.5만엔(약 15만원) - 만3세 이상~초등학생 .1만엔(약 10만원), 셋째 이상 1.5만엔(약 15만원) - 중학생 : 1만엔(10만원) - 일정소득 이상(2자녀 4인가구 기준 연 960만엔)은 5천엔(약 5만원)
영국 (1945)	16세 미만 아동 (경우에 따라 20세 미만까지 지급 가능)	▶ 연소득 5만파운드(약 7,358만원)이하의 경우 82.8파운드(약 12만원) * 둘째부터는 54.8파운드(약 8만원) - 연소득 6만파운드 초과(약 8,829만원)시 제외 - 연소득 5~6만파운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주: 지급액수 및 환율은 2017. 8. 9. 기준임.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p.17-18 수정·보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독일이 18세 미만으로 가장 높으며, 일본의 경우도 중학생까지 지급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영국은 실업상태에 있거나 학업 중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25세 이하(독일), 20세 미만(영국) 자녀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을 확대하고 있다.

다자녀 차등의 경우 독일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자녀 중 셋째이상부터 약 2~3만원 정도 더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에 한하여 만 18세 미만 자녀 중 셋째 이상인 경우에 약 5만원을 더 지급한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둘째자녀부터는 약 4만원 적게 지급한다. 이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아동수당 제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하나로 논의되는 반면에 영국은 아동의 최저생계보장, 즉,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빈곤지원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국은 양육자가 5만 파운드 이상의 연소득이 있는 경우 차등 지급하며, 6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에 따른 수당지급 제한은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양육자가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5천엔만 지급하며, 독일은 소득세청이 양육자가 아동비과세혜택과 아동수당 수령 중 더 이익이 많은 경우를 평가하여 둘 중 혜택이 더 많은 쪽을 택하여 지급한다.

이와 같은 아동수당 소득제한과 관련하여 일본과 영국에서는 소득제한이 되는 연소득을 양육자들 중 어느 한쪽의 수입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처럼 가구소득이 아닌 한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별이와 맞별이 간에 불평등을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3명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외별이 가구소득 기준 연 소득 980만엔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맞별이가 각각 900만엔씩을 벌여 가구 기준 연 소득 1800만엔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독일은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와 같은 아동비과세혜택 중 선택하여 보장해주고, 이 경우에도 기본과세표(한부모 등 외별이 기준)와 분할과세표(맞별이 기준)를 따로 마련하고 있어 가구 간 형평성이 맞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막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급대상과 지급액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급이나 과세체계와의 연계 등을 논할 실익은 크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아동수당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지급연령(18세)과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소득차등 시에는 영국과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맞별이와 외별이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이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 시설장에게 지급한다거나(일본) 실제 보호하고 있는 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독일, 영국)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그 밖에도 일본의 경우 법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자의 아동수당 비용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우리의 경우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I. 아동수당 지원 규모 추계

본 장에서는 아동수당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원규모의 추계를 수행하고자 한다.

1. 아동수당의 유형

본 절에서는 아동수당의 지원규모를 추정하기에 앞서 아동수당의 유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아동수당의 목적 혹은 기능을 보면 (최영진, 2014: 211)에 따라 정리해 보면, 아동수당의 목적과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아동수당제도의 기본 목적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보장이다. 둘째 아동의 양육에 관해서 사회적인 지원을 하는 아동복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아동수당이 다른 정책 등과 더불어 안정된 가정·육아의 전망을 가진 사회 구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의 가족정책 및 인구정책이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에서 아동수당의 유형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이선주 외(2006)에 따르면 아동수당제도 유형을 크게 보편주의형, 사회부조형, 고용연계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형별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제도는 소득 및 근로상황과 무관하게 양육아동이 있는 가정에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회부조형 아동수당제도는 양육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연계형은 미래 노동력의 양적, 질적 제고라는 측면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개인의 고용상태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가 수혜대상이다.

최성은(2010)의 연구에서는 보편주의형, 고용관계형, 공공부조형으로 유형을 정리하였다. 보편주의형은 일정 연령의 자녀를 가진 모든 가구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유럽국가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으며, 고용관련형은 임금근로자를 수혜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과 남미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공

부조형은 사회보험이나 고용관련제도의 혜택에서 누락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아동수당이 제공되는 유형이다.

최영진 (2014)에 따르면, 소득보장 유형에서 아동수당은 양육 아동수에 따라 가구에 아동수당을 보전해 주어 가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빈곤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복지 유형에서의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자질의 향상, 아동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사회의 유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가족정책 유형에서의 아동수당은 가족의 빈곤방지나 가족구성원의 행동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노동정책 유형에서의 아동수당은 미래노동력의 확보 또는 아동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노동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상은 외(2016)의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제도 유형을 보편적복지의 정도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을 수급대상으로 보는 보편적 유형과 일정소득수준 이상의 가구에 속한 아동들은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준보편적 아동수당 형태의 2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아동수당제도의 유형

연구자	유형	개념
이선주 외(2006)	보편주의형 사회부조형 고용연계형	소득 및 고용상태와 무관 소득 기반 고용상태에 따른 지급
최성은(2010)	보편주의형 고용관계형 (공공부조)	정해진 자녀수에 대항하는 자녀를 가진 모든 가구 근로자 대상 (저소득층)
최영진(2014)	소득보장 아동복지 가족정책 노동정책	양육비용 보조 후속세대 건전한 육성 가족 내 문제 해결(가족빈곤) 양질의 후속세대 노동력확보
이상은 외(2016)	보편적 유형 준보편적 유형	모든 아동 대상 일정 소득수준 이상 가구 제외

자료: 1) 이선주 외(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6.

2) 최성은(2010) “아동수당 재원조달의 국제비교와 재원조달 방안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

3) 최영진(2014)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제연구” 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4) 이상은 외(2016) “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2016 사회정치연합 공동학술대회.

2. 추계자료 및 모형

가. 추계자료

본 절에서는 아동수당 지원 규모를 추계하기 위하여 사용된 연구자료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추계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즉, 추계모형-를 제시한 후, 이를 통하여 추계한 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부터 향후 10년간의 지원 규모를 추계하고자 한다. 이러한 추계기간은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후 다른 정책과의 중복 문제 및 세계개편 필요 등 단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이슈들이 산적해 있음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10년간의 지원 규모를 우선적으로 추계하고자 하였다. 즉, 어떠한 정책이 중복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세계가 폐지되거나 확대개편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신중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선제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제도의 도입 단계에서 이들을 고려한 지원 규모 추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할 향후 10년간의 지원 규모를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하여 추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원 대상이 될 아동인구규모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⁴⁶⁾ (2015~2065)’ 자료를 사용하여 연령별로 추정된 아동인구를 구성하였다. 아래 <표Ⅲ-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0세 인구는 410,770명으로 추정되었고, 2021년에는 407,013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본 연구 추계의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2027년에는 2018년의 추계치 보다 높은 415,521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0~12세 영유아 및 아동의 총인구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Ⅲ-1-1), 2018년 5,769,902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7년에는 5,328,025명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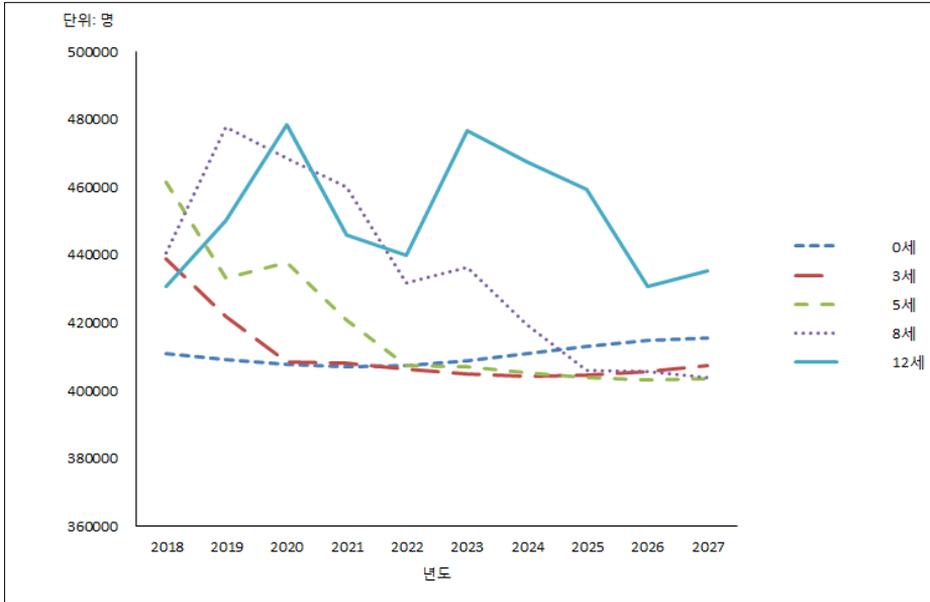
추계에 고려한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은 12세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봤을 때, ‘아동’으로 볼 수

46) 매 5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계속통계자료로 7월 1일 시점의 인구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함. 1964년에 196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추계인구(1960~2000)를 처음 작성함. 2017년 8월 현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인구동태(출생·사망)와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활용한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s method)에 의해 2065년까지 향후 50년간의 인구규모 및 성·연령별 구조가 추계되었음.

〈표 III-2-1〉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단위: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0세	410770	409075	407623	407013	407440	408807	410788	412917	414658	415521		
1세	409221	409032	407310	405833	405193	405582	406906	408838	410918	412609		
2세	422110	408623	408420	406673	405172	404505	404865	406155	408052	410095		
3세	438754	421764	408285	408071	406300	404778	404088	404424	405686	407555		
4세	433776	438338	421343	407876	407656	405868	404331	403623	403942	405184		
5세	461601	433188	437761	420768	407319	407101	405303	403757	403040	403348		
6세	469508	461040	432654	437233	420245	406812	406596	404790	403239	402514		
7세	478004	469053	460590	432223	436810	419822	406402	406187	404375	402816		
8세	440622	477606	468632	460173	431822	436414	419427	406018	405803	403983		
9세	446462	440243	477199	468200	459744	431410	436009	419022	405625	405410		
10세	478572	445970	439774	476702	467676	459226	430911	435520	418535	405153		
11세	449854	478382	445802	439603	476496	467473	459024	430723	435320	418343		
12세	430648	450076	478601	446020	439810	476697	467674	459217	430908	435494		
총인구	5769902	5742390	5693994	5616388	5571683	5534495	5462324	5401191	5350101	5328025		

있는 연령이 12세인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⁴⁷⁾



[그림 III-1-1] 장래인구추계 (선택 연령)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 지원이 보다 현실적인 비용지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단계적 지원액 증가를 구현하고자 기본모형 외에도 임금상승률을 지원액 증가 기준으로 설정하여 추계하였다. 해당 상승률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시간당 명목임금 증감률⁴⁸⁾'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2009년부터 수집된 자료로써, 본 연구에는 지난 5개년 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현상을 고려하여 출산순위별 차등지급 모형도 추계하였다.

나. 추계모형

아동수당 지원 규모 추계를 위한 모형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47) 국가별로 시기별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고 지속적으로 변해옴. 만 16세 이하로 기준을 두고 있는 국가에는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이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 예로 들 수 있음.

48) 한국은행 <http://ecos.bok.or.kr/flex/EasySearch.jsp> (16.거시경제분석지표>시간당명목임금증가률).

$$CA = \sum_{i=0}^n P \cdot N_i \cdot 12$$

CA : 소요재정 총규모

i : 아동 연령

N : 연령별 지급 대상자 수

P : 월 지급 수당

각 년도의 아동지급수당 총 규모는 정부가 월 지급하기로 한 10만원에 각 세(歲) 추정인구를 곱하고 여기에 12를 곱함으로써 추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추계한 모형을 모두 다섯 개 인데, 첫째, 기본모형으로 장래인구추계에 2017년 8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월 10만원의 수당으로 산출하였다(기본형). 둘째, 시간당 명목임금상승률을 증가기준으로 산출하는 모형이다(증가형1). 셋째, 일정기간 별로 정액으로 지원액을 증가시킨 모형이다(증가형2). 넷째, 출산순위별로 차등지급하는 모형으로 둘째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모형이다(출산형1).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을 첫째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확장하면서 둘째아부터는 지급액을 높이는 모형이다(출산형2).

모든 모형에 대하여 0~5세 영유아 및 아동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0~12세에게 지급하는 두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증가형의 경우,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었는데(표 III-2-2 참조), 해당 국가에서는 1996년 첫째 및 둘째자녀에게 102유로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듬해인 1997년에는 10유로 증가한 112유로를 해당 자녀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2년 뒤인 1999년에는 16유로가 증가한 128유로를 동일 출산순위 자녀에게 지급하였다. 1년 뒤인 2000년에는 다시 10유로가 증가한 138유로를, 2년 뒤인 2002년에는 16유로 증가한 154유로를 지급함으로써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자녀에게까지는 동일하게 154유로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경우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 3년마다 2만원을 추가적으로 증가하여 지원하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⁴⁹⁾ 아울러 2자녀부터 아동수당(family benefit)을 지급하는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둘째아부터 지급하는 출산순위형(1)과 첫째아에게도 지원하되 둘째아부터는 더 높은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출산순위형(2)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49) 독일의 경우 6년 기간 동안 54유로의 지원액 증가가 있었으며, 이를 3년 기간으로 분다면 27유로 증가임을 바탕으로 하여 제안함.

〈표 III-2-2〉 독일의 아동수당 인상

년도/출산순위	1996	1997	1999	2000	2002
첫째자녀~둘째자녀	102€	112€	128€	138€	154€
셋째자녀	153	153	153	153	154
넷째자녀 이상	179	179	179	179	179

자료: 독일 일간지 The Welt (2015년 12월 29일자 기사)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50447482/Zwei-Euro-mehr-Kindergeld-sind-ein-Hohn.html>(2017. 7. 17 인출).

〈표 III-2-3〉 프랑스 가족수당

지원대상	급여액(월,유로)
2자녀	130.51
3자녀	297.72
자녀가 증가할 때마다	167.21
11~16세 아동의 증가액	65.25
16세 이상 아동의 증가액	82.52

자료: 프랑스 사회보장(연락)센터 (Centre of European and International Liaisons for Social Security) http://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a1.html(2017. 7. 17 인출).

3. 추계 결과

본 절에서는 앞서 작성한 추계모형을 바탕으로 추정된 아동수당 지원 규모 추계 결과를 모형별로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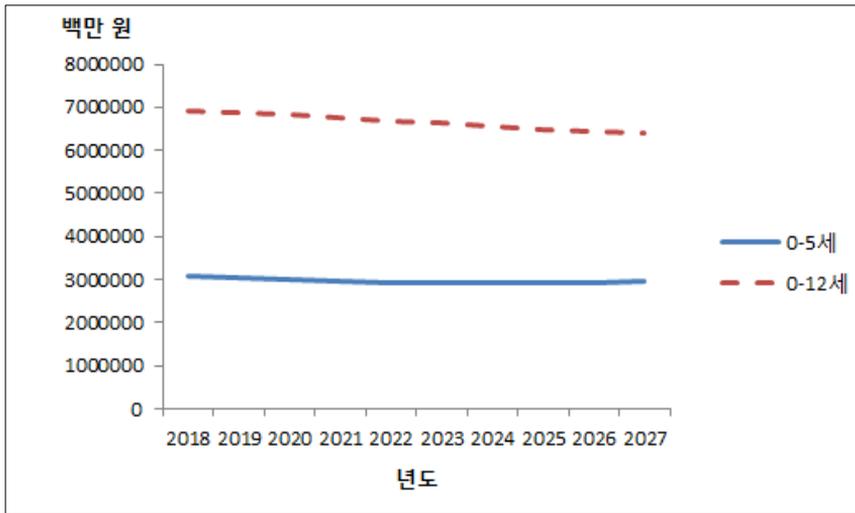
가. 기본형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모형을 기본형으로 설정하였다. 추계기간은 2018~2027년 10년 기간을 추계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15세(일본), 16세(영국), 20세(스웨덴, 프랑스)등의 다양한 지급연령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5세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12세까지 추계하였다.

<표III-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2018년 첫 해에는 3,091,478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아동인구 추계규모가 점점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추계된 예산은 2022년에 2,926,896백만 원 규모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 지원 추계규모는 14,978,770백만 원이다. 추계기간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본다면 총 백만 29,634,662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다음으로 12세까지 지원할 경우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6,923,882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마찬가지로 아동인구 추계 규모의 감소로 인하여 2022년 지원규모는 6,686,020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 추계규모는 34,073,228백만 원이다. 추계기간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본다면 총 66,564,592백만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림 III-3-1] 기본형 추계

〈표 III-3-1〉 기본형추계결과

단위: 백만 원

연령/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소계 ⁵⁰⁾	2023	2024	2025	2026	2027	총계
0	492,924	490,890	489,148	488,416	488,928	2,450,305	490,568	492,946	495,500	497,590	498,625	4,925,534
1	491,065	490,838	488,772	487,000	486,232	2,443,907	486,698	488,287	490,606	493,102	495,131	4,897,730
2	506,532	490,348	490,104	488,008	486,206	2,461,198	485,406	485,838	487,386	489,662	492,114	4,901,604
3	526,505	506,117	489,942	489,685	487,560	2,499,809	485,734	484,906	485,309	486,823	489,066	4,931,646
4	520,531	526,006	505,612	489,451	489,187	2,530,787	487,042	485,197	484,348	484,730	486,221	4,958,324
5	553,921	519,826	525,313	504,922	488,783	2,592,764	488,521	486,364	484,508	483,648	484,018	5,019,823
소계 ⁵¹⁾ (0~5)	3,091,478	3,024,024	2,988,890	2,947,481	2,926,896	14,978,770	2,923,969	2,923,537	2,927,657	2,935,555	2,945,174	29,634,662
6	563,410	553,248	519,185	524,680	504,294	2,664,816	488,174	487,915	485,748	483,887	483,017	5,093,557
7	573,605	562,864	552,708	518,668	524,172	2,732,016	503,786	487,682	487,424	485,250	483,379	5,179,538
8	528,746	573,127	562,358	552,208	518,186	2,734,626	523,697	503,312	487,222	486,964	484,780	5,220,600
9	535,754	528,292	572,639	561,840	551,693	2,750,218	517,692	523,211	502,826	486,750	486,492	5,267,189
10	574,286	535,164	527,729	572,042	561,211	2,770,433	551,071	517,093	522,624	502,242	486,184	5,349,647
11	539,825	574,058	534,962	527,524	571,795	2,748,164	560,968	550,829	516,868	522,384	502,012	5,401,224
12	516,778	540,091	574,321	535,224	527,772	2,694,186	572,036	561,209	551,060	517,090	522,593	5,418,174
총계(0-12)	6,923,882	6,890,868	6,832,793	6,739,666	6,686,020	34,073,228	6,641,394	6,554,789	6,481,429	6,420,121	6,393,630	66,564,592

50) 현 정부입기를 고려하여 2022년까지의 추산액을 소계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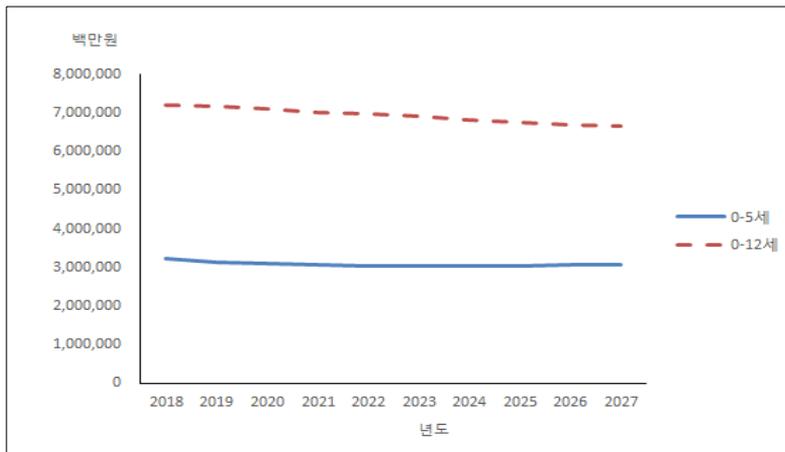
51) 정부에서 제시한 만5세를 고려하여, 5세까지의 추산액을 소계로 제시함.

나. 증가형(1)

본 연구의 추계기간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0년이고, 해당 기간 동안 아동수당 지원이 대상 가정에 보다 현실적인 비용지원이 될 수 있는 단계적 증가를 구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기본모형 외에도 임금상승률을 지원액 증가 기준으로 추계하는 모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시간당 명목임금 증감률’이 사용되었는데, 해당 자료는 2009년부터 수집된 자료로써, 본 연구에는 최근 5년간의 평균임금상승률을 매년 적용하여 증가모형을 구성하였다.

<표Ⅲ-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2018년 첫 해에는 3,224,412 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아동인구 추계규모가 점점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추계된 예산은 2022년에 3,052,753백만 원 규모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 지원(0-5세) 추계규모는 15,622,857백만 원이다. 추계기간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본다면 총 백만 30,908,953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다음으로 12세까지 지원할 경우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7,221,609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마찬가지로 아동인구 추계 규모의 감소로 인하여 2022년 지원규모는 6,973,518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0-12세) 추계규모는 35,538,377백만 원이다. 추계기간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본다면 총 69,426,869백만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림 Ⅲ-3-2] 증가형(1) 추계

〈표 III-3-2〉 증가형(1) 추계결과

연령/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소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계
0	514,120	511,998	510,181	509,417	509,952	2,555,668	511,663	514,142	516,807	518,986	520,066	5,137,332
1	512,181	511,944	509,789	507,941	507,140	2,548,995	507,626	509,284	511,702	514,305	516,421	5,108,333
2	528,313	511,433	511,178	508,992	507,113	2,567,029	506,278	506,729	508,344	510,718	513,275	5,112,373
3	549,145	527,880	511,010	510,742	508,525	2,607,301	506,620	505,757	506,177	507,757	510,096	5,143,707
4	542,914	548,624	527,353	510,498	510,222	2,639,611	507,984	506,061	505,175	505,574	507,128	5,171,532
5	577,740	542,178	547,902	526,633	509,800	2,704,253	509,528	507,277	505,342	504,445	504,830	5,235,676
소계(0-5)	3,224,412	3,154,057	3,117,413	3,074,222	3,052,753	15,622,857	3,049,700	3,049,249	3,053,546	3,061,784	3,071,817	30,908,953
6	587,636	577,038	541,510	547,241	525,979	2,779,403	509,166	508,896	506,635	504,694	503,787	5,312,580
7	598,270	587,067	576,474	540,970	546,711	2,849,493	525,449	508,653	508,384	506,116	504,165	5,402,259
8	551,482	597,772	586,540	575,953	540,468	2,852,215	546,216	524,955	508,172	507,903	505,625	5,445,086
9	558,792	551,008	597,262	585,999	575,416	2,868,477	539,953	545,709	524,448	507,680	507,411	5,493,678
10	598,981	558,176	550,421	596,640	585,343	2,889,561	574,767	539,328	545,097	523,838	507,089	5,579,682
11	563,037	598,743	557,966	550,207	596,382	2,866,335	585,089	574,514	539,093	544,847	523,598	5,633,477
12	538,999	563,315	599,017	558,239	550,466	2,810,036	596,634	585,341	574,756	539,324	545,064	5,651,155
총계(0-12)	7,221,609	7,187,175	7,126,603	7,029,471	6,973,518	35,538,377	6,926,974	6,836,645	6,760,131	6,696,186	6,668,556	69,426,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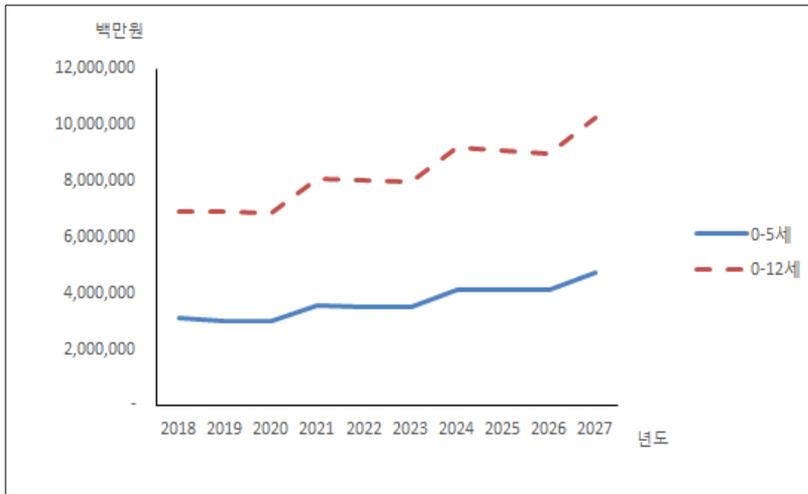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다. 증가형(2)

다음으로 일정 기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액을 증가시킨 모형을 고려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 3년 주기로 2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모형이다.

<표 III-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할 경우, 첫 해인 2018년에는 3,091,478백만 원이 지원예산으로 추계되었고, 2022년 지원예산으로 추계된 규모는 3,512,275백만 원으로 추가적인 지원 증가로 다른 모형과는 달리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 추계규모는 16,153,645백만 원이다. 추계기간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본다면 총 36,676,136백만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다음으로 12세까지 지원할 경우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6,923,882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2022년 지원규모는 8,023,224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 추계규모는 36,758,365백만 원이다. 추계기간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본다면 총 82,196,721백만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림 III-3-3] 증가형(2) 추계

〈표 III-3-3〉 증가형(2) 추계결과

연령/년도	단위: 백만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소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계
0	492,924	490,890	489,148	586,099	586,714	2,645,774	588,682	690,124	693,701	696,625	797,800	6,112,706
1	491,065	490,838	488,772	584,400	583,478	2,638,553	584,038	683,602	686,848	690,342	792,209	6,075,593
2	506,532	490,348	490,104	585,609	583,448	2,656,040	582,487	680,173	682,340	685,527	787,382	6,073,951
3	526,505	506,117	489,942	587,622	585,072	2,695,258	582,880	678,868	679,432	681,552	782,506	6,100,496
4	520,531	526,006	505,612	587,341	587,025	2,726,514	584,450	679,276	678,087	678,623	777,953	6,124,903
5	553,921	519,826	525,313	605,906	586,539	2,791,505	586,225	680,909	678,312	677,107	774,428	6,188,487
소계(0-5)	3,091,478	3,024,024	2,988,890	3,536,977	3,512,275	16,153,645	3,508,763	4,092,952	4,098,720	4,109,777	4,712,279	36,676,136
6	563,410	553,248	519,185	629,616	605,153	2,870,611	585,809	683,081	680,047	677,442	772,827	6,269,817
7	573,605	562,864	552,708	622,401	629,006	2,940,584	604,544	682,755	682,394	679,350	773,407	6,363,034
8	528,746	573,127	562,358	662,649	621,824	2,948,705	628,436	704,637	682,110	681,749	775,647	6,421,285
9	535,754	528,292	572,639	674,208	662,031	2,972,924	621,230	732,495	703,957	681,450	778,387	6,490,444
10	574,286	535,164	527,729	686,451	673,453	2,997,084	661,285	723,930	731,674	703,139	777,894	6,595,006
11	539,825	574,058	534,962	633,028	686,154	2,968,028	673,161	771,160	723,615	731,338	803,219	6,670,520
12	516,778	540,091	574,321	642,269	633,326	2,906,785	686,444	785,692	771,485	723,925	836,148	6,710,480
총계(0-12)	6,923,882	6,890,868	6,832,793	8,087,599	8,023,224	36,758,365	7,969,673	9,176,704	9,074,001	8,988,170	10,229,808	82,196,721

라. 출산순위형(1)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순위를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모형을 구성하여 추계하였다. 연령별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자료는 통계청에서 따로 산출하고 있지 않지만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는 제공하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별도로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를 산출하여 모형에 적용하였다(부표 III-1~III-10 참조). 이를 바탕으로 둘째아부터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경우를 추계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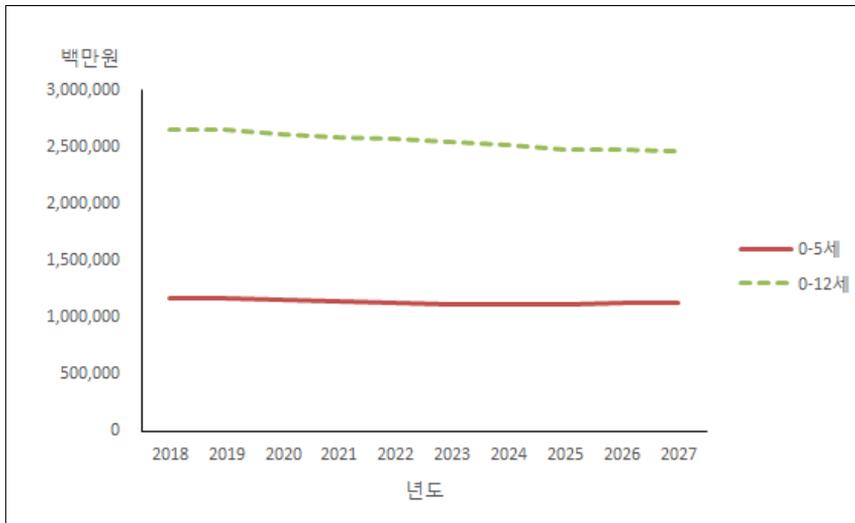
<표 III-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2018년 첫 해에는 1,165,784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아동인구 추계규모가 점점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추계된 예산은 2022년에 1,124,694백만 원 규모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 지원 추계규모는 5,746,010백만 원이다. 추계기간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본다면 총 11,349,254백만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다음으로 12세까지 지원할 경우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2,660,583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마찬가지로 아동인구 추계 규모의 감소로 인하여 2022년 지원규모는 2,571,469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 추계규모는 13,090,350백만 원이다. 추계기간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본다면 총 25,570,055백만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III-3-4〉 출산순위형(1)추계결과

단위:백만 원

수당액	2018	2019	2020	2021	2022	소계
0-5세	1,165,784	1,164,929	1,151,782	1,138,821	1,124,694	5,746,010
0-12세	2,660,583	2,654,394	2,615,376	2,588,527	2,571,469	13,090,350
수당액	2023	2024	2025	2026	2027	총계
0-5세	1,117,532	1,117,540	1,119,292	1,122,500	1,126,380	11,349,254
0-12세	2,543,487	2,515,909	2,483,245	2,473,305	2,463,759	25,570,055



[그림 III-3-4] 출산순위형(1) 추계

마. 출산순위형(2)

다음으로 출산순위모형(1)의 경우를 첫째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둘째아부터는 지급액을 높이는 경우를 추계해 본다. 첫째아의 경우에는 기본모형과 같이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아 이상의 자녀에게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역시 0~5세 연령집단과 0~12세 연령집단을 2018년에서 2027년까지 추계한다.

<표 III-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2018년 첫 해에는 3,674,370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마찬가지로 아동인구 추계규모가 점점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추계된 예산은 2022년에 3,489,243백만 원 규모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 추계규모는 17,851,775백만 원이다. 추계기간을 연장하여 2027년까지 본다면 총 35,309,289백만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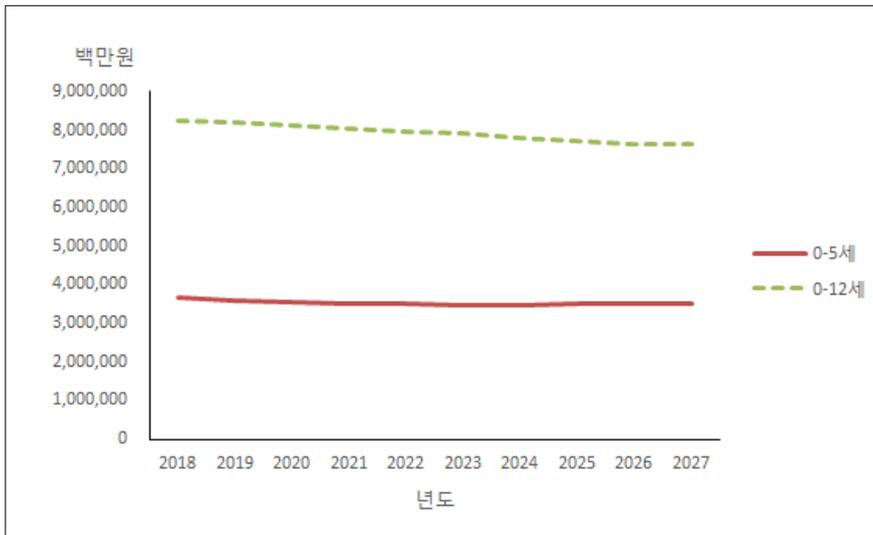
다음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12세까지 지원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8,254,174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추계된 아동인구 규모의 감소로 2022년 지원규모는 7,971,754백만 원으로 소폭 하락한 규모로 산출되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 추계규모는

40,618,403백만 원이다. 추계기간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본다면 총 79,349,619백만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III-3-5〉 출산순위형(2)추계결과

단위:백만 원

수당액	2018	2019	2020	2021	2022	소계
0-5세	3,674,370	3,606,489	3,564,781	3,516,891	3,489,243	17,851,775
0-12세	8,254,174	8,218,065	8,033,929	8,033,929	7,971,754	40,618,403
수당액	2023	2024	2025	2026	2027	총계
0-5세	3,482,735	3,482,307	3,487,303	3,496,805	3,508,364	35,309,289
0-12세	7,913,137	7,812,743	7,723,052	7,656,774	7,625,510	79,349,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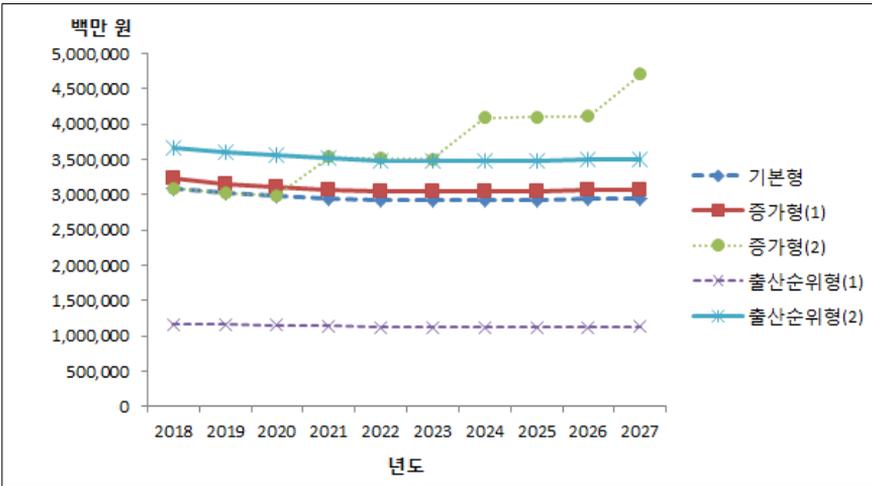


[그림 III-3-5] 출산순위형(2)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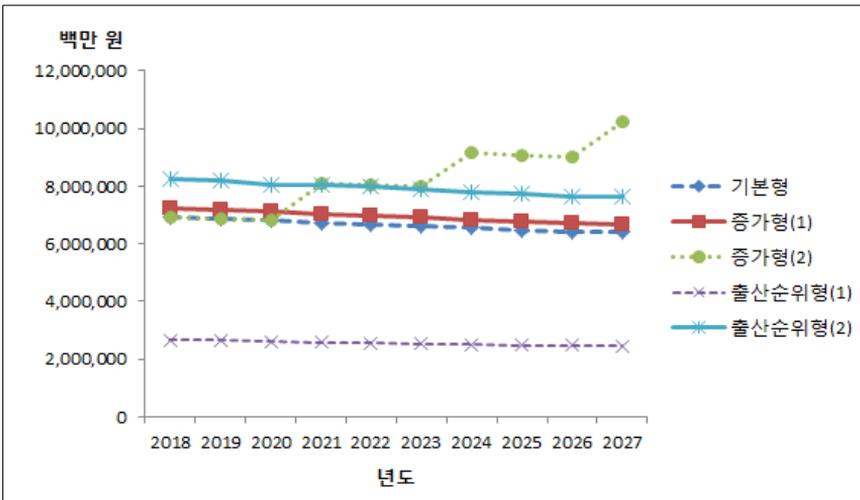
바. 모형 결과 비교

아래 [그림 III-3-6]와 [그림 III-3-7]에서는 앞서 추계한 다양한 지원모형에 대한 결과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는 바와 같이 0-5세에 대한 연도별 추계 모형들을 비교해 보면 둘째아부터 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출산순

위형(1)의 경우가 가장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순위형(2)의 경우는 첫째아에 대한 지급과 함께 둘째아부터는 차등적 증액 지급이 이루어지는 모형이기 때문에 재정 소요 규모가 가장 크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증가형(2)모형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0-12세의 경우는 0-5세와 비교하여 앞선 모형별 추계선에서 보았듯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3-6] 0-5세 추계 비교



[그림 III-3-7] 0-12세 추계 비교

IV. 양육지원 정책

본 장에서는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양육수당과 세제지원의 내용과 지원규모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수당의 향후 역할을 정립해 볼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1.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으로 한다.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 0~만5세(최대 84개월) 아동,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이다. 제외대상은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 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한다. 지원기간은 대상아동의 출생년도 + 6년의 12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2013년 3월부터) 아래 <표 IV-1-1>와 같다.

<표 IV-1-1> 양육수당 지원 내용

단위: 천 원(월)

구분	지원 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 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0	200	
24개월 미만	150	177	200
36개월 미만	100	156	
48개월 미만	100	129	
48개월 이상 ~ 취학 전	100	100	100

자료: 복지포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servChgInfo>
(2017. 7. 4. 인출).

나. 양육수당 지원 규모 추계⁵²⁾

박진아 외(2015) 연구에 따르면 현행 양육수당 단가를 유지할 경우 2018년 재정규모는 1,974,394백만 원, 2022년에는 1,938,021백만 원으로 추산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단가 보다 5만 원을 인상하였을 때 양육수당 재정규모는 2018년 2,604,139백만 원, 2022년 2,553,463백만 원으로 추계되었다. 마지막으로 현행 단가 보다 10만 원 인상한다면, 양육수당 재정규모는 2018년 3,233,884백만 원, 2022년 3,168,906백만 원으로 추계 결과를 보고하였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보았을 때, 기본모형을 기준으로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월)을 지급할 때 소요되는 재정규모가 2018년 3,091,478백만 원, 2022년 2,926,896백만 원이므로 현행 보다 10만 원 인상 지급하는 양육수당 경우를 고려한다면 아동수당 지원의 재정소요 규모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 양육수당 재정 전망치: 현행 지원 단가

단위: 백만 원

구분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1세 반	2세 반	3세 반	4세 반	5세 반	계
2015	1,016,731	623,903	144,095	75,499	39,796	73,819	46,294	2,020,137
2016	1,016,762	623,923	139,544	72,847	50,076	32,317	71,362	2,003,831
2017	1,017,198	624,128	136,877	71,501	45,792	45,218	31,430	1,972,044
2018	1,014,701	622,656	135,217	70,872	42,806	42,886	45,256	1,974,394
2019	1,011,082	620,437	133,913	70,319	42,416	41,488	43,499	1,963,154
2020	1,007,962	618,521	132,640	69,875	40,812	42,329	42,427	1,954,566
2021	1,005,509	617,017	131,686	69,367	37,841	41,771	43,426	1,946,617
2022	1,003,678	615,893	130,973	68,954	37,056	39,989	41,478	1,938,021
2023	1,002,166	614,966	130,457	68,635	36,136	39,566	40,886	1,932,812
2024	1,000,370	613,863	130,078	68,390	35,418	39,311	40,244	1,927,674

자료: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52)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의 주요 결과를 재구성함.

〈표 IV-1-3〉 양육수당 재정 전망치: 5만원인상

단위: 백만 원

년도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1세 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계
2015	1,016,731	623,903	144,095	75,499	39,796	73,819	46,294	2,020,137
2016	1,270,953	831,898	209,317	109,271	75,114	48,476	107,042	2,652,071
2017	1,271,373	832,171	205,315	107,251	68,688	67,828	47,146	2,599,772
2018	1,268,376	830,208	202,826	106,308	64,210	64,328	67,883	2,604,139
2019	1,263,852	827,249	200,869	105,478	36,625	62,231	65,248	2,588,552
2020	1,259,952	824,695	198,959	104,812	61,218	63,493	63,611	2,576,770
2021	1,256,886	822,689	197,528	104,051	56,761	62,656	65,138	2,565,709
2022	1,254,597	821,191	196,459	103,432	55,584	59,983	62,217	2,553,463
2023	1,252,707	819,955	195,685	102,953	54,203	59,350	61,330	2,546,183
2024	1,250,463	818,484	195,116	102,586	53,127	58,966	60,367	2,539,109

자료: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표 IV-1-4〉 양육수당 재정 전망치: 10만원인상

단위: 백만원

년도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1세 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계
2015	1,016,731	623,903	144,095	75,499	39,796	73,819	46,294	2,020,137
2016	1,525,144	1,039,872	279,089	145,694	100,152	64,634	142,723	3,297,308
2017	1,525,648	1,040,214	273,754	143,002	91,584	90,437	62,861	3,227,500
2018	1,522,051	1,037,760	270,434	141,744	85,613	85,771	90,511	3,233,884
2019	1,516,622	1,034,061	267,826	140,638	84,833	82,975	86,998	3,213,953
2020	1,511,942	1,030,869	265,279	139,750	81,624	84,658	84,854	3,198,976
2021	1,508,263	1,028,361	263,371	138,734	75,682	83,542	86,851	3,184,804
2022	1,505,516	1,026,489	261,946	137,909	74,112	79,978	82,956	3,168,906
2023	1,503,248	1,024,944	260,914	137,270	72,271	79,133	81,773	3,159,553
2024	1,500,556	1,023,105	260,155	136,781	70,836	78,622	80,489	3,150,544

자료: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2. 세제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복지측면의 아동수당과

조세측면의 공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상은, 정찬미, 2016). 따라서 본 항에서는 과 관련한 조세제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표 IV-2-1 참조).

먼저 자녀세액공제(비환급형 세액공제)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또한 6세 이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 원을 세액공제하며, 당해연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을 세액공제한다.

인적소득공제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환급형세액공제)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수급자가 40세 이상,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 1,300~2,500만원 미만,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그리고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단,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자녀장려세제(CTC, 환급형세액공제)는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세금의 환급방식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양자녀가 있고, 거주자(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이면서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표 IV-2-1〉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조세 지원

조세	항목	감면 내용
산출세액	자녀세액 공제	<p>1. 공제요건과 공제금액</p> <p>① 기본공제 받는 자녀(임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p>② 6세 이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세액공제</p> <p>③ 당해연도 출생·임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세액공제</p> <p>2. 공제참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② 손자·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 함 ③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④ 자녀가 3명 이상인 맞벌이부부는 부모 중 한 쪽에서 자녀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자녀세액공제의 혜택이 큼 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음
근로소득 금액	인적공제	<p>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p> <p>추가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부양가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우대 :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부녀자 : 부녀자의 경우 연 50만원 공제(여성 근로자만 해당) - 환부모 :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 받는(손)자녀·임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p>≫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p>

(표 IV-2-1 계속)

조세		항목	감면 내용	
상속세	인적공제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수혜자 :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		
		수혜내용 :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지급)		
		- 신청자격 (모두 충족)		
		①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수급자가 40세 이상일 것		
		②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 1,300~2,500만원 미만		
		③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④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단,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7/600		
	600만원~900만원	77만원 정액지급		
	900만원~1,300만원	77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X77/400		
홀벌이 가족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85/900		
	900만~1,200만원	185만원 정액지급		
	1,200만~2,100만원	185만원-(총급여액 등 - 1,200만원)X185/900		
맞벌이 가족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230/1000		
	1,000만원~1,300만원	230만원 정액지급		
	1,300만~2,500만원	230만원-(총급여액 등 - 1,300만원)X230/1200		

(표 IV-2-1 계속)

조세	항목
----	----

감면 내용

- 수혜자 :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근로자, 사업자 가구
- 수혜내용 :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세금의 환급방식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14년 소득을 기준으로 ‘15년부터 지급)
- 신청자격 (모두 충족)
 - ① 부양자녀가 있을 것(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 ② 거주자(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
 - ③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 ④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세제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홀벌이 가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50만원
	2,100만원~4,000만원	부양자녀 수 X [50만원-(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20/1900]
맞벌이 가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50만원
	2,500만원~4,000만원	부양자녀 수 X[50만원-(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20/1500]

자료: 1) 한국납세자연맹 소득,세액공제 해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3.htm> (2017. 7. 12. 인출).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omment/comment_jomun_main_internet.jsp?node_id=G00000&lawid=001561&jomunkey=0020005&lawnm=%EC%83%81%EC%86%8D%EC%84%B8%EB%B0%8F%EC%A6%9D%EC%97%AC%EC%84%B8%EB%B2%95&jomun_nm=%EC%A0%9C20%EC%A1%B0%E3%80%90%EA%B7%B8%20%EB%B0%96%EC%9D%98%20%EC%9D%B8%EC%A0%81%EA%B3%B5%EC%A0%9C%E3%80%91&public_ilja=20141119&public_no=12844 (2017. 7. 12. 인출).
 3) 기획재정부(2017). 2017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이러한 세제지원 규모를 보면,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2017년 기준 13,598억 원, 근로장려세제는 12,45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7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관련 세제지원 총 규모는 32,083억 원으로, 비교년도의 차이와 수혜자의 기준에 대한 차이는 있겠으나 2018년 규모로 추정된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원규모인 30,914억 원 보다 그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자녀 양육에 대한 혜택에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녀세액공제 규모만 보더라도 2018년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원규모의 44%에 이르는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제지원의 개편을 통하여 아동수당 재정규모의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2-2〉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조세 지원 실적

단위: 억 원

분야	2013(실적)	2014년(실적)	2015년(실적)	2016년(전망)	2017년(전망)
자녀세액공제		5,868	12,784	13,365	13,598
근로장려세제	5,618	7,765	10,625	11,000	12,452
자녀장려세제(15년도입)	-	-	6,555	6,250	6,033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14년 세액공제 전환)	1,923	-	-	-	-
계	7,541	13,633	29,964	30,615	32,083

자료: 기획재정부(각년도). 2017, 2016, 2015 조세지출예산서.

V. 정책제언

아동수당은 유자녀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하겠다.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역시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녀양육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정책적인 측면, 즉,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은 다소 부차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제도 혹은 정책은 각 국가들이 처한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혹은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아동수당의 목적을 다소 다각적으로 살피어 해당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출산장려 목적 고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아동수당제도의 목적을 정립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와는 달리 출산장려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둘째 혹은 셋째아부터는 아동수당 지원의 증액을 고려하여 두(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출산을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무교육 연령과 아동수당 수령 연령의 연계 고려

최소한 의무교육을 받는 연령까지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 연령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여러 국가들의 경우 아동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시기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해당 제도의 목적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만 16~20세까지로 하고 있다. 2017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만 5세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혜 연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기존 각 종 지원제도와와의 중복성을 점검하여 해당 지원의 정리 및 폐지 고려

기존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 및 관련 세제지원의 역할을 재정리하여 아동수당과 그 성격 및 역할이 중복되는 지원은 기존 수혜자들의 불편 혹은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나감으로써 필요한 경우 폐지되는 수순을 밟도록 하여 국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양육수당의 경우 0-2세 영아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하도록 하여 지원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달성하도록 하면서 그 이후의 연령의 아동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는 재원은 아동수당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을 아동수당 재원으로 흡수함으로써 아동수당의 기본 목적을 분명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재정의 운영 면에서 본다면 일부 조건(모형)하에서는 기존의 지원 정책 보다 아동수당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가 작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성 지원은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 및 폐지해야 할 것이다.

4. 아동수당 지원 증액 및 다양한 지원 기준 수립 고려

물가의 상승, 자녀양육에 대한 지출 패턴 및 규모 변화 등 향후 자녀양육 가구가 처할 여러 가지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아동수당 지원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책정될 수 있는 정책적 모형을 해당 부처에서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아동수당 증액 혹은 일정 시기별로 일정 액수를 증액시킴으로써 아동수당 지원액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가구지출의 부담을 줄이는데 현실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련 지원제도를 정리 및 폐지하면서 아동수당을 정립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동수당 수혜 가구의 다양한 조건들(자녀수, 자녀연령 등)을 지원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물론 수혜자들의 만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통합형 아동수당 체계 마련 고려

아동수당 지원의 증액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 수혜자들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지원으로써의 수당을 제공하고, 그에 더하여 개별 수혜자들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적인 정책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에서 한 가구에 지원하는 총 아동수당을 '기본지원+특성별지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별적 수당제도를 통합하여 보편적 '기초아동수당'과 아동별 특수욕구에 대안하는 '선별적 수당'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최영, 2017). 특성별 지원 명목으로 장애아동, 한부모가구, 다자녀수당 등의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함으로써 해당 가구들에 대한 관련 지원들을 일정 부분 흡수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2016). 아동수당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6호), 2016. 1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6a).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양승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0호), 2016. 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6b).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99호), 2016. 1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박인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53호), 김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044호), 2017. 2.
- 국회예산정책처(2016a).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비용추계서, 법안비용추계3과 2016-83, 2016. 6. 23.
- 국회예산정책처(2016b).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박광온의원) 비용추계서, 법안비용추계3과 2016-261, 2016. 8. 26.
- 국회예산정책처(2016c).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비용추계서, 법안비용추계3과 2016-623, 2016. 12. 14.
-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
- 국회예산정책처(2017a).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비용추계서, 법안비용추계3과 2017-24, 2017. 1. 13.
- 국회예산정책처(2017b).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비용추계서, 법안비용추계3과 2017-63, 2017. 2. 9.
- 국회예산정책처(2017c).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의원) 비용추계서, 법안비용추계3과 2017-104, 2017. 2. 27.
- 국회예산정책처(2017d).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비용추계서, 법안비용추계3과 2017-293, 2017. 6. 9.
- 국회예산정책처(2017e).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비용추계서, 법안비용추계3과 2017-366, 2017. 7. 21.

- 기획재정부(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조세지출예산서.
- 김경석(2012). 일본의 아동수당법 개정.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2012년 제6호, pp.25-34.
-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20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44호), 2017. 1. 11.
-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2017).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532호), 2017. 3. 31.
-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20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13호), 2017. 6. 5.
- 독일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6). Elterngeld, ElterngeldPlus und Elternzeit (Das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 독일연방 조세청(Bundeszentralamt für Steuern)(2017). Merkblatt Kindergeld.
- 민희철·우석진·김현숙·김혜원·류덕현·옥우석(2007).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 의 정부의 역할.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박경일(1996). 프랑스, 영국 가족수당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12(2).
- 박광온의원 대표발의(2016).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99호), 2016. 10. 7.
- 박인숙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12. 9)」 대표 발의
-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20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53호), 2016. 6. 22.
-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2017)
- 서문희·최윤경·신윤정·이세원(2010).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신윤정·김지연(2010).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2017).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6223호), 2017. 3. 17.
- 유해미(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현안보고서 제83호. 국회입법조사처.
-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20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43호), 2017. 6. 12.
- 이상은·정찬미(2016). 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6(2), 827-850.
- 이선주·박선영·김은정(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전일주·최영진(2015). 일본 아동수당법의 내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pp.179-206.
- 전혜숙의원 대표발의(20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71호), 2017. 7. 19.
- 최성은·신운정·김미숙·임완섭(2009).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은·우석진(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은(2010). 아동수당 재원조달의 국제비교와 재원조달 방안 연구.
- 최영(2017). 돌봄정책으로서의 현금수당: 한국형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방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2017. 5. 19.), pp. 237-258.
- 최영진(2008). 일본 아동수당법에 관한 연구 - 수당의 지급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8권 제2호, pp.299-329.
- 최영진(2014).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제연구. 법학연구, 22(3), 7.
- Bradshaw, Jonathan(2003). "Introduction and Overview." pp. xvii-xxxii. In Jonathan Bradshaw(ed.). Children and Social Security. Hamp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 Institute for Fiscal Studies(2016). A Survey of the UK Benefit System. IFS Briefing Note BN 13.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2014).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14/15”.

Katja Kruse(2016). Kindergeld. 독일신체/중증장애우연합회(bvkm).

[웹사이트 및 기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omment/comment_jomun_main_internet.jsp?node_id=G00000&lawid=001561&jomunkey=0020005&lawnm=%EC%83%81%EC%86%8D%EC%84%B8%EB%B0%8F%EC%A6%9D%EC%97%AC%EC%84%B8%EB%B2%95&jomun_nm=%EC%A0%9C20%EC%A1%B0%E3%80%90%EA%B7%B8%20%EB%B0%96%EC%9D%98%20%EC%9D%B8%EC%A0%81%EA%B3%B5%EC%A0%9C%E3%80%91&public_ilja=20141119&public_no=12844 (2017. 7. 12. 인출)

독일 AuswandernHandbuch 홈페이지: <https://www.auswandern-handbuch.de/kindergeld-im-ausland/> (2017. 8. 1. 인출).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2015년 7월 21일 기사: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wirtschaftspolitik/betreuungsgeld-oder-kita-ausbau-der-streit-ums-geld-13713322.html> (2017. 8. 1. 인출).

독일 Kinderfreibeträge: <http://www.servat.unibe.ch/dfr/bv043108.html> (2017. 8. 1. 인출).

독일 Kindergeld.org. 홈페이지: <http://www.kindergeld.org/kindergeld-bei-behinderung.html> (2017. 8. 1. 인출).

독일 Kindergeld-Auszahlungstermine 홈페이지: <http://www.kindergeld-auszahlungstermine.de/2017/01/kindergeld-2017/> (2017. 8. 1. 인출).

독일 Spiegel 2017년 5월 15일 기사: <http://www.spiegel.de/gesundheit/schwangerschaft/deutschlands-geburtensziffer-bleibt-unter-eu-durchschnitt-a-1147782.html> (2017. 8. 1. 인출).

독일 WELT 2016년 9월 21일 기사: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158294203/Babyboom-in-Deutschland-bei-auslaendischen-Muettern.html>; <http://www.zeit.de/gesellschaft/2016-10/geburtenrate-deutschland-auslaendische-muetter-alter-bundeslaender> (2017. 8. 1. 인출).

- 독일 www.elterngeld.net 홈페이지: <https://www.elterngeld.net/elterngeld-bezugszeitraum.html>(2017. 8. 1. 인출).
- 독일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www.familien-wegweiser.de/wegweiser/stichwortverzeichnis,did=93576.html>(2017. 8. 1. 인출).
- 독일 일간지 The Welt 2015년 12월 29일 기사: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50447482/Zwei-Euro-mehr-Kindergeld-sind-ein-Hohn.html>(2017. 7. 17. 인출).
- 독일연방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gesetze-im-internet.de>(2017. 8. 1. 인출).
- 독일연방연합회 AWO 홈페이지: <http://awo-schwanger.de/finanzielle-hilfen/#mutterschutz>(2017. 8. 1. 인출).
- 박광은 아동수당 보도자료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cad=rja&uact=8&ved=0ahUKEwjh6pTd5LzVAhWKgrwKHfK-C5MQFggqMAE&url=http%3A%2F%2Fwww.theminjoo.kr%2FfileDn.do%3Fseq%3D17835&usq=AFQjCNECDLzxsNfbEX8Xh8jmuqG5bjXaw>(2017. 7. 20. 인출)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servChgInfo> (2017. 7. 4. 인출).
- 영국 Money Advice Service 홈페이지:
<https://www.moneyadviceservice.org.uk/en/articles/claiming-child-benefit>(2017. 8. 1. 인출).
- 영국 아동수당 연혁 정보(영국 국립문서보존소 홈페이지):
<http://www.nationalarchives.gov.uk/cabinetpapers/themes/beveridge-report-child-benefit.htm> (2017. 8. 2. 인출).
- 영국 아동수당 정보(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child-benefit> (2017. 8. 2. 인출).
- 일본 교토부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http://www.city.kyoto.lg.jp/hagukumi/cms/files/contents/0000182/182951/nihongo.pdf>(2017. 8. 1. 인출).
- 일본 내각부(2017). 일본 아동수당 제도 안내 리플릿(내각부 홈페이지):
http://www8.cao.go.jp/shoushi/jidouteate/pdf/leaf_teate.pdf (2017. 8. 2. 인출).

일본 아동수당법 시행령: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e%99%93%b6%8e%e8%93%96%96%40&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46SE281&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2017. 8. 2. 인출).

일본 아동수당법: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e%99%93%b6%8e%e8%93%96%96%40&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46HO073&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2017. 8. 2. 인출).

중앙일보(2013. 1. 8). “보편적 복지 허무는 영국…아동수당, 고소득층 제외”:

<http://news.joins.com/article/10360709>

통계청(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_A001&vw_cd=MT_ZTITLE&list_id=A41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2017. 6. 1. 인출)

프랑스 사회보장(연락)센터(Centre of European and International Liaisons for Social Security) http://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a1.html(2017. 7. 17. 인출).

프레스리안(2016. 12. 16). “아동에게 수당 주는 영국, 이것이 공정한 분배 - 영국 가족 수당, 그 100년의 역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6310&ref=nav_search

한국납세자연맹 소득,세액공제 해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_urn13.htm(2017. 7. 12. 인출).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ecos.bok.or.kr/flex/EasySearch.jsp>(2017. 7. 12. 인출).

2017년 일본 아동수당 제도 개요(내각부 홈페이지):

<http://www8.cao.go.jp/shoushi/jidouate/gaiyou.html> (2017. 8. 2. 인출).

부 록

부록 1. 해외 국가의 아동수당 현황

부록 2.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2018-2027)

부록 1. 해외 국가의 아동수당 현황

가. 개관

〈부표 II-1〉 해외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국 가	도입 년도	지급연령	지급내용(월 기준)
독일 (출산율 1.47명)	1954	18세 미만 아동	▶ 자녀수에 따라 차등 - 첫째, 둘째 자녀: 184유로(23만원) - 셋째 자녀: 190유로(24만원) - 넷째 자녀: 215유로(27만원)
일본 (출산율 1.46명)	1972	만15세(중학생) 이하 아동 (1972년 0~12세 선별적 지원 2010년 0~15세 보편적 지원 2012년 0~15세 연령, 아동 수,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연령, 자녀수, 소득수준별 차등 - 만3세 미만: 1.5만엔(16만원) - 만3세 이상~초등학생 :1만엔(11만원), 셋째 이상 1.5만엔(16만원) -중학생 : 1만엔(11만원) - 일정소득 이상(2자녀 4인가구 기준 연 960만엔)은 5천엔(5만원) * 재원부담은 국가와 지자체가 2:1 부담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3세 미만에 대한 아동수당의 7/15(46.6%) 부담
영국 (출산율 1.81명)	1945	16세 미만 아동 (2013년부터 소득별 차등)	▶ 연소득 5만파운드(약 7,148만원)이하 15만원 * 둘째부터 10만원씩 추가 - 연소득 6만파운드 초과(약 8,578만원)시 제외 - 연소득 5~6만파운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프랑스 (출산율 2.01명)	1932	20세 미만 아동 (2015.7월부터 소득별 차등)	▶ 두 자녀부터 지원, 자녀수·소득수준별 차등 - 두 자녀 월 소득 6천유로 이하 129.35유로(16만원) 6천유로 초과시 1/2, 8천유로 초과시 1/4 - 세 자녀 월 소득 6천5백유로 이하 295.05유로(37만원) 6천5백유로 초과시 1/2, 8천5백유로 초과시 1/4 - 네 자녀 월 소득 7천유로 이하 460.77유로(57만원) 7천유로 초과시 1/2, 9천유로 초과시 1/4

국 가	도입 년도	지급연령	지급내용(월 기준)
오스트 리아 (출산율 1.47명)	1948	18세 미만 아동 (학생, 직업교 육, 중증장애인 일 경우는 24 세 미만)	▶ 연령별 차등 - 3세미만: 105.40유로(13만원) - 3-9세: 112.7유로(14만원) - 10-18세: 130.9유로(16만원)
스페인 (출산율 1.32명)	1938	만 18세 미만 양육 및 입양아동	▶ 아동 일인당 24.25유로(3만원)
그리스 (출산율 1.30명)	1958	18세 미만 아동 (전업학생인 경우 22세)	▶ 자녀수에 따라 차등 - 한 자녀: 98.64유로(12만원) - 두 자녀: 295.80유로(37만원) - 세 자녀: 665.64유로(83만원) - 네 자녀: 808.56유로(100만원) - 이후 자녀마다: 135.48유로(17만원) 추가
포르 투갈 (출산율 1.24명)	1942	16세 미만 아동 (학생은 24세)	▶ 소득수준, 연령별 차등 - 가구소득이 최저임금의 50%이하, 만0~3세 140.76유로(18만원) 만3세 이후 35.19유로(4만원) - 가구소득이 최저임금의 51%-100%, 만0~3세 116.74유로(15만원) 만3세 이후 29.19유로(3만원) - 가구소득이 최저임금 101%-150% 만0~3세 92.29유로(12만원) 만3세 이후 26.54유로(3만원)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p.17-18.

나. 캐나다

아동수당은 조정된 순가구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 AFNI)이 3만 달
러 이상일 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자녀 수에 따른 감소 수준은 다음과 같다.

〈부표 II-2〉 캐나다 아동수당 변동 현황

아동 수	AFNI	차감범위
1명	3만 달러 이상 6.5만 달러 미만	아동수당의 7% 차감 지급
	6.5만 달러 이상	3.2% 추가 차감 지급
2명	3만 달러 이상 6.5만 달러 미만	아동수당의 13.5% 차감 지급
	6.5만 달러 이상	5.7%가 추가 차감 지급

아동 수	AFNI	차감범위
3명	3만 달러 이상 6.5만 달러 미만	아동수당의 19% 차감 지급
	6.5만 달러 이상	8%가 추가 차감 지급
4명 이상	3만 달러 이상 6.5만 달러 미만	아동수당의 23% 차감 지급
	6.5만 달러 이상	9.5%가 추가 차감 지급

자료: 캐나다 정부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hild-benefit-overview/canada-child-benefit-we-calculate-your-ccb.html>

〈부표 II-3〉 캐나다 연령별 아동수당

아동연령	세부 내용
6세 미만	수혜자격이 있는 아동 1 인당 연간 \$ 6,400 (월 \$ 533.33)
6세~17세	수혜자격이 있는 아동 1 인당 연간 \$ 5,400 (월 \$ 450.00)

자료: 캐나다 정부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hild-benefit-overview/canada-child-benefit-we-calculate-your-ccb.html> (2017. 7. 21. 인출)

다.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아동 수당은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동 1명 당 월 140유로를 지급한다(2016년 1월까지의 월 135유로 지급). 최초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아이를 낳은 다음 달 초부터 지급되며,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된다.

〈부표 II-4〉 아일랜드 아동수당(2017)

아동 수	월 수당액, €
1명	140
2명	280
3명	420
4명	560
5명	700
6명	840
7명	980
8명	1,120

자료: 아일랜드 공공서비스 정보 사이트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social_welfare/social_welfare_payments/social_welfare_payments_to_families_and_children/child_benefit.html(2017. 7. 21. 인출)

라. 스웨덴

스웨덴의 아동수당은 아동이 16세가 되는 분기까지 지급되며, 아동 1인당 월 SEK1,050를 지급한다. 대가족 추가수당은 아동수당 지급액에 따라 다르다.

〈부표 II-5〉 스웨덴 아동수당

아동 수	아동 수당액, SEK	대가족 추가수당액, SEK	월간 총계, SEK
1	1050	-	1050
2	2100	150	2250
3	3150	604	3754
4	4200	1614	5814
5	5250	2864	8114

자료: 아동수당 및 대가족 지원

[https://web.archive.org/web/20131110205454/http://www.forsakringskassan.se/wps/wcm/connect/3573e1a0-c838-4e7c-bf65-c634544bc55d/barnbidrag_flerbarnstillagg_eng.pdf?MOD=AJPERES\(2017. 7. 21. 인출\)](https://web.archive.org/web/20131110205454/http://www.forsakringskassan.se/wps/wcm/connect/3573e1a0-c838-4e7c-bf65-c634544bc55d/barnbidrag_flerbarnstillagg_eng.pdf?MOD=AJPERES(2017. 7. 21. 인출))

마. 핀란드

한부모인 경우 추가 아동수당 €48.55를 자녀 한 명당 더 지급받을 수 있다.

〈부표 II-6〉 핀란드 아동수당

아동 수에 따른 아동수당액 (17세 미만까지 지급)	€ 월 수당액
첫째자녀	94.88
둘째자녀	104.84
셋째자녀	133.79
넷째자녀	153.24
다섯째자녀 이상	172.69

자료: 핀란드 사회보험연구원 <http://www.kela.fi/web/en/child-benefit-amount-and-payment> (2017. 7. 21. 인출)

바. 영국

16세 미만의 아동(인가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20세 미만)에 양육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 한 명에 대해서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육책임자 또는 그 책임자의 파트너 개인 소득이 £50,000

이상인 경우 지급받는 아동수당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부표 11-7〉 아동수당과 보호자 수당

구분	2014-15	2015-16	증감율
	£ 주당 지급액	£ 주당 지급액	
첫째아이	20.50	20.70	0.20
둘째 혹은 그 이상	13.55	13.70	0.15
보호자 수당(Guardian's Allowance)	16.35	16.55	0.20

자료: 영국 정부 사이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x-and-tax-credit-rates-and-thresholds-for-2015-16/tax-and-tax-credit-rates-and-thresholds-for-2015-16#child-benefit-and-guardians-allowance>(2017. 7. 21. 인출)

부록 2. 출신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2018-2027)

〈부표 III-1〉 출신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18)

구분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총계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455	436,455	484,550	471,265	470,171	444,849	465,892	433,189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436,770	436,770	436,770
1아	226,271	226,271	226,271	228,613	225,392	224,807	248,888	239,577	235,333	230,184	242,024	262,154	239,577	248,888	224,807	225,392	228,613	226,271	226,271	226,271
2아	165,708	165,708	165,708	166,130	165,332	165,661	184,020	178,981	181,871	170,090	176,079	181,850	178,981	184,020	165,661	165,332	166,130	165,708	165,708	165,708
3아	38,333	38,333	38,333	37,109	38,226	39,664	44,231	45,398	43,805	36,789	39,360	41,011	45,398	44,231	39,664	38,226	37,109	38,333	38,333	38,333
4아	4,510	4,510	4,510	4,389	4,582	4,560	5,266	5,233	5,091	4,215	4,189	4,164	5,233	5,266	4,560	4,582	4,389	4,510	4,510	4,510
5아	709	709	709	715	671	741	829	746	780	648	577	532	746	829	741	671	715	709	709	709
6아	174	174	174	167	160	195	179	178	168	122	138	134	178	179	195	160	167	174	174	174
7아	49	49	49	54	45	48	58	55	55	44	39	51	55	58	48	45	54	49	49	49
8아	25	25	25	22	28	26	33	34	33	44	30	21	34	33	26	28	22	25	25	25
미상	991	991	991	1,221	999	753	1,046	1,063	3,035	2,713	3,456	3,272	1,063	1,046	753	999	1,221	991	991	991
총인구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55	484,550	471,265	470,171	444,849	465,892	433,189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436,770	436,770	436,770

〈부표 III-2〉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19)

구분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총계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55	484,550	471,265	470,171	444,889	444,889	444,88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436,770	436,770
1아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8,613	225,392	224,807	248,888	239,577	235,333	230,184	230,184	235,333	239,577	248,888	248,807	225,392	228,613	226,271	226,271	226,271
2아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6,130	165,332	165,661	184,020	178,981	181,871	170,090	170,090	181,871	178,981	184,020	165,661	165,332	166,130	165,708	165,708	165,708
3아	38,333	38,333	38,333	38,333	37,109	38,226	39,664	44,231	45,398	43,805	36,789	36,789	43,805	45,398	44,231	39,664	38,226	37,109	38,333	38,333	38,333
4아	4,510	4,510	4,510	4,510	4,389	4,582	4,560	5,266	5,233	5,091	4,215	4,215	5,091	5,233	5,266	4,560	4,582	4,389	4,510	4,510	4,510
5아	709	709	709	709	715	671	741	829	746	780	648	648	780	746	829	741	671	715	709	709	709
6아	174	174	174	174	174	160	195	179	178	168	122	122	168	178	179	195	160	167	174	174	174
7아	49	49	49	49	54	45	48	58	55	55	44	44	55	55	58	48	45	54	49	49	49
8이상	25	25	25	25	22	28	26	33	34	33	44	44	33	34	33	26	28	22	25	25	25
미상	991	991	991	991	1,221	999	753	1,046	1,063	3,035	2,713	2,713	3,035	1,063	1,046	753	999	1,221	991	991	991
총인구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55	484,550	471,265	470,171	444,889	444,88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436,770	436,770	436,770

〈부표 III-3〉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0)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총계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55	484,550	471,265	470,171	444,849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436,770
1아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8,613	225,392	224,807	248,888	239,577	235,333	230,184	230,184	230,184	239,577	248,888	224,807	225,392	228,613	226,271
2아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6,130	165,332	165,661	184,020	178,981	181,871	170,090	170,090	181,871	178,981	184,020	165,661	165,332	166,130	165,708
3아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7,109	38,226	39,664	44,231	45,398	43,805	36,789	36,789	43,805	45,398	44,231	39,664	38,226	37,109	38,333
4아	4,510	4,510	4,510	4,510	4,510	4,389	4,582	4,560	5,266	5,233	5,091	4,215	4,215	5,091	5,233	5,266	4,560	4,582	4,389	4,510
5아	709	709	709	709	709	715	671	741	829	746	780	648	648	780	746	829	741	671	715	709
6아	174	174	174	174	174	167	160	195	179	178	168	122	122	168	178	179	195	160	167	174
7아	49	49	49	49	49	54	45	48	58	55	55	44	44	55	55	58	48	45	54	49
8이상	25	25	25	25	25	22	28	26	33	34	33	44	44	33	34	33	26	28	22	25
미상	991	991	991	991	991	1,221	999	753	1,046	1,063	3,035	2,713	2,713	3,035	1,063	1,046	753	999	1,221	991
총인구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55	484,550	471,265	470,171	444,849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436,770

〈부표 III-4〉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1)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총계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455	436,455	436,550	471,265	470,171	444,849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6,455	436,455	
1아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613	225,392	224,817	248,888	239,577	235,333	230,184	230,184	235,333	239,577	248,888	224,817	224,817	225,392	228,613
2아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6,130	165,332	165,661	184,020	178,981	181,871	170,090	170,090	181,871	178,981	184,020	165,661	165,661	165,332	166,130
3아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7,109	38,226	39,664	44,231	45,398	43,805	36,789	36,789	43,805	45,398	44,231	39,664	38,226	38,226	37,109
4아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389	4,582	4,560	5,266	5,233	5,091	4,215	4,215	5,091	5,233	5,266	4,560	4,582	4,582	4,389
5아	709	709	709	709	709	709	715	671	741	829	746	780	648	648	780	746	829	741	671	671	715
6아	174	174	174	174	174	174	167	160	195	179	178	168	122	122	168	178	179	195	160	160	167
7아	49	49	49	49	49	49	54	45	48	58	55	55	44	44	55	55	58	48	45	45	54
8이상	25	25	25	25	25	25	22	28	26	33	34	33	44	44	33	34	33	26	28	28	22
미상	991	991	991	991	991	991	1,221	999	753	1,046	1,063	3,035	2,713	2,713	3,035	1,063	1,046	753	999	999	1,221
총인구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55	436,550	471,265	470,171	444,849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6,455	436,455	438,420

〈부표 III-5〉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2)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총계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5,435	436,455	436,455	471,265	470,171	444,849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6,455
1아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8,613	225,392	224,817	248,888	299,577	235,333	230,184	230,184	235,333	299,577	248,888	224,817	225,392
2아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6,130	166,130	165,332	165,661	184,020	178,981	181,871	170,090	170,090	181,871	178,981	184,020	165,661	165,332
3아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7,109	37,109	38,226	39,664	44,231	45,398	43,805	36,789	36,789	43,805	45,398	44,231	39,664	38,226
4아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389	4,389	4,582	4,560	5,266	5,233	5,091	4,215	4,215	5,091	5,233	5,266	4,560	4,582
5아	709	709	709	709	709	709	715	715	671	741	829	746	780	648	648	780	746	829	741	671
6아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67	160	195	179	178	168	122	122	168	178	179	195	160
7아	49	49	49	49	49	49	54	54	45	48	58	55	55	44	44	55	55	58	48	45
8이상	25	25	25	25	25	25	22	22	28	26	33	34	33	44	44	33	34	33	26	28
미상	991	991	991	991	991	991	1,221	1,221	999	753	1,046	1,063	3,035	2,713	2,713	3,035	1,063	1,046	753	999
총인구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8,420	435,435	436,455	436,455	471,265	470,171	444,849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6,455

〈부표 III-6〉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3)

구분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총계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55	484,550	471,265	470,171	444,849	444,849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1아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8,613	225,392	224,807	248,888	239,577	235,333	230,184	230,184	230,184	235,333	239,577	248,888	224,807
2아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6,130	165,332	165,661	184,020	178,981	181,871	170,090	170,090	170,090	181,871	178,981	184,020	165,661
3아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7,109	38,226	39,664	44,231	45,398	43,805	36,789	36,789	36,789	43,805	45,398	44,231	39,664
4아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389	4,582	4,560	5,266	5,233	5,091	4,215	4,215	4,215	5,091	5,233	5,266	4,560
5아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15	671	741	829	746	780	648	648	648	780	746	829	741
6아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67	160	195	179	178	168	122	122	122	168	178	179	195
7아	49	49	49	49	49	49	49	54	45	48	58	55	55	44	44	44	55	55	58	48
8이상	25	25	25	25	25	25	25	22	28	26	33	34	33	44	44	44	33	34	33	26
미상	991	991	991	991	991	991	991	1,221	999	753	1,046	1,063	3,035	2,713	2,713	2,713	3,035	1,063	1,046	753
총인구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55	484,550	471,265	470,171	444,849	444,849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부표 III-7〉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4)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총계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35	484,550	471,265	470,171	444,849	444,849	470,171	471,265	484,550
1아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8,613	225,392	224,817	248,888	239,577	235,333	230,184	230,184	235,333	239,577	248,888
2아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6,130	165,332	165,661	184,020	178,981	181,871	170,090	170,090	181,871	178,981	184,020
3아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7,109	38,226	39,664	44,231	45,398	43,805	36,789	36,789	43,805	45,398	44,231
4아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389	4,582	4,560	5,266	5,233	5,091	4,215	4,215	5,091	5,233	5,266
5아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15	671	741	829	746	780	648	648	780	746	829
6아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67	160	195	179	178	168	122	122	168	178	179
7아	49	49	49	49	49	49	49	49	49	54	45	48	58	55	55	44	44	55	55	58
8이상	25	25	25	25	25	25	25	25	25	22	28	26	33	34	33	44	44	33	34	33
미상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1,221	999	753	1,046	1,063	3,035	2,713	2,713	3,035	1,063	1,046
총인구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35	484,550	471,265	470,171	444,849	444,849	470,171	471,265	484,550

〈부표 III-8〉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5)

구분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총계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55	484,550	471,265	470,171	444,849	444,849	444,849	470,171	471,265	
1아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8,613	225,392	224,807	248,888	239,577	235,333	230,184	230,184	230,184	230,184	235,333	239,577
2아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6,130	165,332	165,661	184,020	178,981	181,871	170,000	170,000	170,000	181,871	178,981	
3아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7,109	38,226	39,664	44,231	45,398	43,805	36,789	36,789	36,789	43,805	45,398	
4아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389	4,582	4,560	5,266	5,233	5,091	4,215	4,215	4,215	5,091	5,233	
5아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15	671	741	829	746	780	648	648	648	780	746	
6아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67	160	195	179	178	168	122	122	122	168	178	
7아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54	45	48	58	55	55	44	44	44	55	55	
8이상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2	28	26	33	34	33	44	44	44	33	34	
미상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1,221	999	753	1,046	1,063	3,035	2,713	2,713	2,713	3,035	1,063	
총인구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55	484,550	471,265	470,171	444,849	444,849	444,849	470,171	471,265	

〈부표 III-9〉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6)

구분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총계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455	436,455	471,265	470,171	444,849	444,849	470,171
1아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8,613	225,392	224,817	248,888	299,577	235,333	230,184	230,184	235,333
2아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6,130	165,332	165,661	184,020	178,981	181,871	170,090	170,090	181,871
3아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7,109	38,226	39,664	44,231	45,398	43,805	36,789	36,789	43,805
4아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389	4,582	4,560	5,266	5,233	5,091	4,215	4,215	5,091
5아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15	671	741	829	746	780	648	648	780
6아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67	160	195	179	178	168	122	122	168
7아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54	45	48	58	55	55	44	44	55
8이상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2	28	26	33	34	33	44	44	33
미상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1,221	999	753	1,046	1,063	3,035	2,713	2,713	3,035
총인구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55	434,550	471,265	470,171	444,849	444,849	470,171

〈부표 III-10〉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계 결과(2027)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총계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55	484,550	471,265	470,171	444,849	444,849
1아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6,271	228,613	225,392	224,807	248,888	239,577	235,333	230,184	230,184
2아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5,708	166,130	165,332	165,661	184,020	178,981	181,871	170,090	170,090
3아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8,333	37,109	38,226	39,664	44,231	45,398	43,805	36,789	36,789
4아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510	4,389	4,582	4,560	5,266	5,233	5,091	4,215	4,215
5아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09	715	671	741	829	746	780	648	648
6아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67	160	195	179	178	168	122	122
7아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54	45	48	58	55	55	44	44
8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2	28	26	33	34	33	44	44
미상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991	1,221	999	753	1,046	1,063	3,035	2,713	2,713
총인구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6,770	438,420	435,435	436,455	484,550	471,265	470,171	444,849	444,849

연구보고 2017-01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

발행일 2017년 8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13-8 9333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ChildCare and Institute of Education

